

종합감사

감사 보고서

- 전남대학교 종합감사 -

2026. 4.

교 육 부

감사결과에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학교가 비리에 연관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2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처분 요구 사항	6
(1) 비전임교원 채용 관련 직무관련자 미신고(기관경고, 통보)	6
(2) 조교 임용 면접심사 미실시 등 채용절차 부적절(기관경고, 경고, 통보)	11
(3) 교원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경고, 통보)	15
(4) ♡ 학술연구교수 임용 절차 부적정(기관경고, 경고, 통보)	18
(5) ♣과 전임교원 임용 관리 소홀(통보, <별도조치> 통보)	22
(6) 교원의 겸직 미허가와 창업교수의 약정 기부 미이행(주의, 통보)	28
(7)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기관경고, 통보, <별도조치> 통보)	34
(8) □사업 퇴직자 연구비 환수 검토 소홀(기관주의, 통보)	36
(9) ▽사업 예산 집행 관리 소홀(기관주의, <별도조치> 통보)	39
(10) √사업 사업 관리 부적정(기관주의, 주의, 통보)	41
(11) 연구비 중앙관리 미실시(주의, 통보, 통보(인사자료))	47

(12) ○사업 사업비 등 사적 사용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기관경고, 문책(중징계), 시정(회수), 통보, <별도조치>통보)	51
(13)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기관경고, 시정(회수), 통보, <별도조치> 통보)	56
(14)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미지급(기관주의, 통보(시정완료), 통보)	59
(15) 교원의 사단법인(●) 겸직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등 부적정(기관경고, 통보, <별도조치> 통보)	64
(16) ■재단 기부금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보통재산으로 편입·사용 등 기부 받은 재산 관리 부적정(<별도조치> 통보)	70
(17) ㅅ에서 교직원 경조사비 등 집행 부적정(<별도조치> 통보)	76
(18) ㅈ에서 보직수행경비 및 유류비 등 집행 부적정(<별도조치> 통보)	80
(19) □대학원 ㄱ전공 입학전형 및 학사 운영 관련 관리 소홀(기관경고, 통보(2), <별도조치> 통보)	88
(20) 등록금 반환 대상인 제적 학생에게 등록금 미반환(기관주의, 시정(반환), 통보, <별도조치> 통보)	100
(21) 공사 감독일지 작성 업무 소홀(기관경고, 통보)	105
(22) 시설공사 시공내역 정산 미실시(주의, 시정)	111
(23)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시정)	115
(24) 가설건축물 설치 부적정(기관경고, 통보)	118
(25) 전기설비 안전관리규정 및 연간 점검계획 미수립(기관주의, 통보)	121
IV. 현시조치 사항	125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전남대학교는 2016. 4.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아 감사 주기를 고려할 때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전남대학교의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전남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4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감사를 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전남대학교의 교직원 인사 및 복무 관리, 예산 및 회계 관리, 입시 및 학사 관리, 시설물 안전 및 재산 관리,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 필요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2021. 1월 ~ 2024. 8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전남대학교에 대한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주요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2024. 8. 26.부터 9. 6.까지, 2024. 9. 9.부터 9. 11.까지 2회에 걸쳐 13일간 감사인원 14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전남대학교는 2024. 9. 6. 총장 등 주요 보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개최하고, 2025. 3. 31.(1차), 2025. 4. 23.(2차), 2025. 5. 9.(3차), 2025. 6. 12.(4차) 서면으로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5. 9.(1차), 2025. 11. 21.(2차), 2025. 12. 15.(3차) 감사처분심의회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II. 감사대상기관 현황1)

1. 주요 연혁

전남대학교는 1952년 광주농과대학, 광주의과대학, 광주상과대학, 목포상과대학을 통합하고 공과대학을 신설하여 개교하였으며, 2006년 여수대학교와 통합하였다.

2. 학생 현황

전남대학교는 [표 1]과 같이 2024. 7. 31. 기준 전체 재학생 수는 대학 19,499명, 대학원 4,879명, 합계 24,378명이다.

[표 1] 전남대학교 학생 현황

(단위: 명)

입학정원	대학		입학정원	대학원		입학정원	계	
	현원			현원			현원	
	재적학생	재학생		재적학생	재학생		재적학생	재학생
4,380	25,200	19,499	2,407	5,522	4,879	6,787	30,722	24,378

3. 교직원 현황

전남대학교는 [표 2]와 같이 2024. 4. 1. 기준 교원 수는 2,574명이고, 직원 수는 명이다.

[표 2] 전남대학교 교직원 현황

(단위: 명)

총장	교원				직원				합계
	전임 교원	비전임 교원	조교	소계	일반직	연구직	대학 회계직	소계	
1	1,142	1,184	247	2,573	416	6	118	540	3,113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기관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4. 예산 현황

전남대학교의 예산은 [표 3]과 같이 2023년 704,366백만 원에서 2024년 778,984백만 원으로 74,618백만 원(10.59%) 증가하였다.

[표 3] 전남대학교 예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비율)
대학회계	446,437	509,931	63,494(14.22)
산학협력단	236,081	246,748	10,667(4.52)
발전기금	21,848	22,305	457(2.09)
계	704,366	778,984	74,618(10.59)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감사결과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별도조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전남 대학교	1명 (1건)	-	3명 (3건)	19명 (4건)	23명 (8건)	· 기관경고 10건 · 기관주의 6건 · 통보 21건 · 통보(시정완료) 1건 【합계 38건】	· 시정(회수) 4건, 33,037,830원 · 시정(반환) 1건, 53,332,440원 【합계 5건】	· 수사의뢰 1건 · 통보 12건 【합계 13건】

※ () 안은 신분상 조치 대상자에 대한 지적 건수 합계임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예산·회계 분야

- ① (사업비) ○사업비 등 사적 사용, 감사자료 허위 제출
 - Y가 ○사업비와 간접비 사적 사용
 - 관련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교육부 종합감사 요구자료 허위 제출
- ② (ㄸ) 목적에 반하여 보직 수행 경비 등 집행 부적정
 - ㄸ 목적에 반하여 총 238,660천원 집행

(나) 채용·인사 분야

- ① (채용) 전임교원 지원자격 검증 미흡
 - 지원자는 ☆ 학술지 동일호에 등재된 연구 실적 2편 제출, 동 실적은 ☆ 학술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 * 동일호에 2편 이상 게재 불가
 - O는 해당 학술지 게재 심사를 담당했음에도 신고 없이 채용 자격심사 참여, 해당 지원자 합격 처리

② (인사) 수사기관 통보 범죄 사건 관련 징계 업무처리 부적정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나, 징계 의결 요구 없이 '□□' 조치, 징계 시효 도과

(다) 시설 분야

① (시설공사) 시설공사 공사대금 미정산, 공사비 과다 지급

- 계획과 달리 실제 시공되지 않은 내역에 대해 공사비 지급
- 사용 증빙이 미흡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정산으로 공사비 과다 지급

이에 대하여 전남대학교 총장에게 ○사업 사업비와 △단 간접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적 사용 내역을 고의로 누락하여 감사자료를 제출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시설공사 시공내역 정산 미실시로 과다 지급한 공사비 13,337,000원의 시정(회수) 등 총 2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였다.

2. 처분 요구 사항: 25건[붙임 참조]

교 육 부

기관경고, 통보

제 목 비전임교원 채용 관련 직무관련자 미신고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단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 ♣단²⁾은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학술연구교수와 인문한국 연구교수(이하 “HK연구교수”라 한다)를 공개 채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 ♣단 소속 ○소, □센터의 장과 전남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인 △원의 장은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그림]과 같은 채용절차를 마련하여 소속 학술연구교수, HK연구교수를 임용하고 있다.

[그림] 학술연구교수, HK연구교수 임용 절차



2) 「전남대학교 ♣단 정관」 제22조(객원교수 등의 채용)에 따르면 연구교수의 임면,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및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평가·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 교직원은 학술연구교수, HK연구교수 등의 채용과 관계된 시험·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할 시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 A 등 3명은 학술연구교수·HK 연구교수 채용에서 (석)박사 논문을 지도하였거나 같은 과·연구소에서 강사·연구원으로 근무하여 학연·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지원자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총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대학교 A는 ○소 학술연구교수 채용에서 대학원 석·박사 논문을 지도하고,

논문 공동저자 및 특히 공동 출원자로 참여하여 학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B가 지원자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

전남대학교 C는 □센터 학술연구교수 채용에서 위탁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자와 연구원으로 같이 근무했으며, 논문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지원자 D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전남대학교 E는 △원 HK연구교수 채용에서 대학원 박사 논문을 지도하였고, 5년간 전남대 강사로 근무하여 학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F가 지원자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소속 연구원뿐만 아니라 ↳단 소속 연구소 등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설명회(연 2회)에서도 교직원 행동강령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는 등 향후 공개채용 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전남대학교 ○소, □센터, △원은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의 채용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비전임교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A, C, E를 포함한 소속 교직원에게 신고 의무 등을 사전에 안내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A는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학연으로 관계가 있는 직무관련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소에서 공개 채용한 5개 분야 중 화학해양학 분야 지원자는 B 1명이었던 점, 해당 분야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해 급하게 채용을 진행해야 했기에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는 행동강령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숙지하지 못하여 총장에게 서면 신고하는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고 답변하였다. 다만, 지원자가 D 1명이었던 점, 학술연구교수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서류·면접 전형을 걸쳐 지원자를 평가한 점, 연구 인력의 이동 등으로 직무관련자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는 해당 지원자의 지도교수이자 직무관계자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총 2명의 지원자 중 1명이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지원자가 1명이었던 점, 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 구성 문제 등으로 본인의 평가 점수가 지원자의 평가에서 배제된 점 등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③ 검토결과

A 등 3명이 지원자의 박사 또는 석·박사 논문 지도교수이거나 동일 연구과제 책임연구원 등으로 지원자와 학연·직연 관계가 있음에도 채용 관련 업무 수행 시 해당 내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전남대학교 ○소, □센터, △원이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A 등 3명에게 신고 의무 등을 사전에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점, 실질적인 지원자가 1명으로 직무관련자 미신고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지원자가 없었던 점은 처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①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관련자 관련 내용 등을 안내하지 않는 등 채용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소, □센터, △원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②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 경고, 통보

제 목 조교 임용 면접심사 미실시 등 채용절차 부적절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전남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에 따라 조교는 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내신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남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조교는 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내신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과**에서 학기별로 학과 등에 안내하는 “조교 임용 내신 요청” 공문에 따르면 학부(과)의 조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 및 학부(과)에서 학교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 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는 수요부서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한 후 임용내신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및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평가·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 학부(과)에서는 학부(과)의 조교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계획에 의한 모집 공고,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했고, 조교 채용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총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 ▷원 등 3개 학부(과)에서는 2021. 3월부터 2024. 3월까지 조교 23명을 채용하면서 학교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고, 면접심사 절차없이 교수 본인 단독의 서류심사만 실시한 후 임용 내신하였다.

또한, G는 대학원 석사 논문을 지도하고 전공 교과목 강의(3과목)를 담당하여 학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H를 조교로 추천한 후,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총장에게 직무관련자임을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조교의 경우 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학과(부)의 학문 이해도 등이 요구되나, 지원 인력 및 적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모집 공고 및 면접심사를 생략한 채 내부 추천을 통한 조교 임용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G는 ㄱ전공 대학원생을 조교로 임용함에 있어 학과에 대한 학문 이해도가 있는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조교를 추천하였을 뿐 논문지도 학생에 대한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3개 학과뿐만 아니라 전체 학과에 대해 2025. 3. 1.자 신규 임용 조교 내신 시 모집 공고 및 공개채용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남대학교 ▷원 등 3개 학과에서는 조교 지원 인력 및 적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모집공고 및 면접심사를 생략하고 내부추천을 통한 임용내신하였다고 하나, 「전남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등에 따른 채용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조교를 임용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G는 논문지도 및 대학원 강의 수강 학생에 대한 조교 신규 채용 서류 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학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했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① 「전남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을 위반하여 조교 채용 절차를 소홀히 한 해당 학과 (▷원, ▽과, ◁과)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② 조교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G에게 경고 조치하며, (경고)

③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경고, 통보

제 목 교원 징계 업무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라 교원 징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에 대하여 별표 1(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징계 의결 요구)부터 별표 6(징계부가금 부과)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처리기준)까지 적용하는 등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15조의2에 따르면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 (이하 “징계기준 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2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해 검찰·경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과)는 2023. 2. 16. ◇으로부터 「ㄴ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 통보받은 전남대학교 I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없이 2023. 2. 20. ‘○○’ 처분만 조치(총장 결재)하였고,

또한, 2021. 1. 22. ◇으로부터 「ㄷ법률」 위반으로 ‘기소유예’ 결정 통보받은 J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없이 2021. 2. 15. ‘□□’ 처분만 조치(총장 결재)하여 징계 시효(3년)가 도과되게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징계 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I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 징계 의결요청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남대학교(□과)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징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안 2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건은 '□□' 처분 조치한 점, 업무담당자인 K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총장) 등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은 처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 징계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여 징계 시효가 도과되게 한 K에게 경고 조치하고, **(경고)**
- ② 향후 유사 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징계 업무 처리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 경고, 통보

제 목 ♡ 학술연구교수 임용 절차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단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단)는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전남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운영 및 활용 지침」 등에 따라 학술연구교수 및 박사후 연구원 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장은 「전남대학교 ♡ 규정」에 따라 ♡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학술연구교수'라 함은 우수연구인력의 확보를 통해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임용된 자를 말하며, 「같은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학술연구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⁴⁾에 해당하는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로서 중앙부처 및 정부출연 연구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는 자로 학술연구

4)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수 2년, 교육경력연수 2년, 총 4년,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수 3년, 교육경력연수 4년, 총 7년

교수를 임용하고자 하는 소속예정기관장은 자체 채용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공개채용 후 제청에 의하여 총장⁵⁾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운영 및 활용 지침」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박사후 연구원(Post-Doc.)이라 함은 박사학위 취득 후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중앙부처 및 정부출연 연구지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활용기관 소속 연구책임교수, 연구소장, 센터장 또는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단의 자격심사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 박사후 연구원 채용계획 및 공고문에 따르면 박사후 연구원의 응시요건은 채용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018년 1월 1일 이후 채용일 이전까지 SCI급저널 3편 이상인 자로 담당업무는 각각 ‘□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연구 및 기획관련 업무수행’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 ♡는 학술연구교수 및 박사후 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 ♡는 박사후 연구원 채용에 단독 지원한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인 L에 대해 면접전형을 실시하였으나, 채용계획 및 공고문과 달리 박사후 연구원이 아닌 학술연구교수로 변경하여 △단에 학술연구교수 임용을 신청하였으며, △단은 ♡의 채용계획 및 공고문 등에 대한 확인 없이 L을 학술연구교수로 임용하였다.

5) 「전남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및 「전남대학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단 소관 학술연구교수 및 연구원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단 전결사항임.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채용계획 및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이전에 작성된 박사후 연구원 공고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표기 오류 사항이 발생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업무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문서 인용 등의 오기를 발견하고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학술연구교수를 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L은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학술연구교수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단에서는 자체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원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남대학교는 채용계획 및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면접위원들과 협의를 하여 박사후 연구원을 학술연구교수로 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박사후 채용계획 및 공고문과 달리 L을 박사후 연구원이 아닌 학술연구교수로 임용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전남대학교 ♡ 채용 담당직원이 계약직 1명으로 근무기간이 짧아 법령과약 등 업무가 미숙했었고 L의 계약기간이 1년이었던 점은 처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단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 ② 「전남대학교 비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장 M에게 경고 조치하며, (경고)
- ③ 향후 유사 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채용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통보, <별도조치> 통보

제 목 ❄과 전임교원 임용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전임교원 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4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2항 및 이 영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채용후보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심사 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그 밖에 심사위원이 채용후보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되며, 심사위원은 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교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재결(裁決)·결정·검정(檢定)·시험·평가·사정(査定)·조정·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그 밖에 전남대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을 말하며, 교직원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는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공개채용은 [그림]과 같이 채용공고, 지원서 접수, 서류(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합격자발표, 임용 등의 순서로 진행하며, 공개채용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및 절차 등은 공개채용 전형지침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절차



* 자료: 전남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4학년도 1학기 제71회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2023. 9.)”에 따르면 연구(실기)실적물 제출 기준은 2020. 9. 1. ~ 2023. 9. 30. 기간에 발표된 연구(실기) 실적물만 인정되며, 인문·사회계열 연구(실기)실적물 인정 기준은 학술논문의 경우 ▣ 등재(후보)지는 150%, S급 국제규모 학술지는 400% 등으로

되어 있으며, “2024학년도 1학기 제71회 전남대학교 교수 초빙공고”에 따르면 ☞과는 인문·사회계열로 연구실적 최소자격 요건은 국제 또는 국내 연구실적물 300%로 되어 있다.

한편, ☆ 소속 ●는 ▣으로부터 등재지로 인정받은 논문집을 연간 4회 발간하고 있다. 「☆ ● 규정」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전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 ● 논문집 투고규정」 제1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본 논문집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연구원에 한하나, 공동연구자로서 연구원의 인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단독저자는 동일 호에 2편 이상 게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전임교원을 채용할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 ● 연구원이 아닌 2024학년도 1학기 전남대학교 ☞과 전임교원 채용지원자 N은 2023. 9. 30. ☆ ● 논문집에 2023년 9월 동일 호에 단독저자로 논문 2편을 투고하였으나, ☆는 심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전남대학교 ☞과 재직 중이던 O는 N이 ☆ 논문집에 투고한 논문 2편 중 ‘르연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수정 후 게재’ 하도록 판정하여 2편은 그대로 논문집에 게재되었으며, 그 결과 N은 게재된 논문 2편을 ☞과 전임교원 채용을 위한 연구실적물로 전남대학교에 제출하였다.

한편, O는 2024학년도 1학기 전남대학교 ☞과 전임교원 채용 시 N이 지원한 채용과정별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하였으며,

특히, 본인이 ☆ ● 논문 심사위원으로서 심사한 N의 논문(르연구)이 전남대

학교 ㉞과 전임교원 채용 연구실적물과 동일함에도 채용심사에서 회피하거나 총장에게 “직무관련자”임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전공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N에게 19점(20점 만점)을 부여하였고 N은 제출한 연구실적물 2편을 각각 150%씩 합계 300%로 인정받아 면접심사를 거쳐 신규 임용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는 ☆의 학술지 논문심사는 학술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자와 투고자 모두에게 무기명으로 진행되고 채용 전공심사 이전에 논문심사는 종료되었으므로 ○는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는 ‘직무관련자’라고 볼 수 없으며, 심사위원으로서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항도 없어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학술지 논문의 게재와 관련된 사항은 전남대학교와 무관하게 각 학술 연구단체의 자체적인 기준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향후 교원 채용시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및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 공개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직원에게 교육과 심사위원회에 특수관계 회피 관련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며, 심사위원 스스로 특수관계를 회피하도록 특수관계 신청서를 지침에 명시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단독저자가 동일 호에 2편 이상을 게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으로 편집 과정에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되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전남대학교는 Ⓢ과 전임교원 채용 전공심사 이전에 ☆의 논문집 게재를 위한 논문심사가 종료되었으므로 교수 O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의 논문 게재는 전남대학교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가 2023. 9. N이 ☆에 투고한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다음 달인 2023. 10. N이 전남대학교에 제출한 동일 논문을 포함한 연구실적물 등을 심사한 위원(장)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심사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더라도 O는 해당 논문이 N의 논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남대학교의 채용 전공심사 이전에 ☆의 논문심사가 종료되었더라도 O는 심사위원(장)으로서 N의 채용시험과 관련되는 자로 N은 O의 심사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자로 판단된다.

아울러, O는 한 달 간격으로 N의 ☆ 논문 심사위원과 전남대학교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남대학교에 신고하거나 제척 및 회피여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전남대학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N의 논문 게재에 대해 ☆의 조치가 우선 이루어진 후, 전남대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과 N과 관련된 ☆의 조치결과를 제출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전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과 달리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과 ○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며, 향후 유사 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도조치(통보)>

교 육 부

주의, 통보

제 목 교원의 겸직 미허가와 창업교수의 약정 기부 미이행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재단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대학교는 「국가공무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남대학교 교수 창업지원규정」 등에 따라 교원의 겸직 및 창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교원의 겸직 허가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르면 “겸직”이란 함은 본교의 교원이 본교 이외 타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지침」 제5조 제1항 및 제7조에 따르면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나 소속 대학(원)장 승인⁶⁾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겸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창업교수의 약정 기부 관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등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교수창업지원규정」 제2조에 따르면 “창업교수”라 함은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창업교수는 겸·휴직 승인기간 중 평균 보유 주식의 2% 이상을 겸·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남대학교발전후원회장(現 ■재단 이사장)에게 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 교원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타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총장이나 소속 대학의 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고, 창업 교수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겸직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겸직 기간 평균 보유 주식의 2% 이상을 ■재단 이사장에게 기부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교원의 겸직 허가 관련

그런데 전남대학교 P 등 11명은 [표 1]과 같이 2020. 3월부터 2024.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장이나 소속 대학의 장의 허가 없이 타 기관의 직무를 겸하였다.

6) ① 1개월 이하의 외부강의, ② 비영리단체(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 임·직원, ③ 학회 회장, 부회장, 이사 등,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단체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직

[표 1] 미허가 겸직 현황

연번	소속	직급	성명	겸직 현황				대가 여부	당연직 여부
				기관명	직책	겸직 시작일	겸직 종료일		
1	㉠	교수	P	▼	-	2023.04.25	2025.04.24	무보수	X
2		-	-	-	-	2022.02.16	2027.02.15	무보수	X
						2023.03.01	2024.02.29	무보수	X
3	-	-	-	-	-	2021.12.31	2023.12.30	무보수	X
4		-	-		-	2023.12.09	2025.12.08	무보수	X
5		-	-		-	2022.03.31	2024.04.09	무보수	X
6		-	-		-	2023.12.09	2024.04.09	무보수	X
7		-	-		-	2023.12.09	2025.12.08	무보수	X
8		-	-		-	2022.03.23	2024.04.09	무보수	X
9		-	-		-	2022.09.01	2023.12.30	무보수	X
10		-	-		-	2020.03.27	2022.03.26	무보수	X
11		-	-		-	2020.03.27	2022.03.26	무보수	X

자료: 전남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나. 창업교수의 약정 기부 관련

전남대학교 Q 등 12명은 [표 2]와 같이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대표 등의 직무를 겸하였고, 겸직 기간 중 평균 보유 주식의 2% 등을 겸직이 만료되는 시점에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표 2] 창업교수 겸직 현황

연번	직위	소속	성명	겸직 기관	직위	겸직일		약정서 내용	
						시작일	종료일	약정 기부 금액	제출 여부
1	교수	☒☒	Q	☒	대표이사	2021.07.24.	2023.07.23.	유가증권(주식)*	○
2	-	-	-	-	공동대표	2021.07.02.	2023.07.01.	보유주식의 2%	○
3	-	-	-	-	대표이사	2021.10.01.	2023.09.30.	보유주식의 2%	○
4	-	-	-	-	대표이사	2021.01.20.	2023.01.19.	보유주식의 2%	○
5	-	-	-	-	대표이사	2020.01.22.	2022.01.21.	보유주식의 2%	○
6	-	-	-	-	대표	2021.01.18.	2023.01.17.	유가증권(주식)*	○
7	-	-	-	-	대표이사	2021.11.26.	2023.11.25.	보유주식의 2%	○
8	-	-	-	-	대표이사	2019.08.10.	2021.08.09.	보유주식의 2% (주식 6,720주)	○
						2021.08.10.	2023.08.09.	보유주식의 2% (주식 6,720주)	○
9	-	-	-	-	대표이사	2020.04.01.	2022.03.31.	보유주식의 2%	○
						2022.04.01.	2024.03.31.	보유주식의 2%	○
10	-	-	-	-	대표이사	2020.03.27.	2022.03.26.	보유주식의 2%	○
						2024.04.12.	2026.04.11.	보유주식의 2%	○
11	-	-	-	-	대표이사	2019.12.26.	2021.12.25.	보유주식의 2%	○
						2021.12.26.	2023.12.25.	유가증권(주식)*	○
12	-	-	-	-	대표이사	2020.05.11.	2022.05.10.	보유주식의 2% (주식 29,562주)	○

자료: 전남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관련 규정 및 약정서 내용과 달리 전남대학교 Q 등 7명은 [표 3]과 같이
 겸직 기간 만료 후 총 22,932천 원을 전남대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기부하지
 않았다.

[표 3] 창업교수 기부 현황

연번	직위	소속	성명	겸직 기관	직위	기부 예정액(천원) (추정)	기부 현황		미기부액 (천원)
							기부액(천원)	납부일	
1	교수	☒☒	Q	☒	대표이사	275	미납	-	275
2	-	-	-	-	공동대표	1,570	미납	-	1,570
3	-	-	-	-	대표이사	7,000	미납	-	7,000
4	-	-	-	-	대표이사	보유 주식 없음	-	-	-
5	-	-	-	-	대표이사	500	미납	-	500
6	-	-	-	-	대표	보유 주식 없음	-	-	-
7	-	-	-	-	대표이사	보유 주식 없음	-	-	-
8	-	-	-	-	대표이사	3,360	3,360	2022.12.5.	4,939
						4,939	미납	-	
9	-	-	-	-	대표이사	1,600	미납	-	4,000
						2,400	미납	-	
10	-	-	-	-	대표이사	보유 주식 없음	-	-	-
11	-	-	-	-	대표이사	1,859	미납	-	4,648
						2,789	미납	-	
12	-	-	-	-	대표이사	475,948	475,948	2024.5.2.	-
계						502,240	479,308		22,932

자료: 전남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전남대학교(▲처 및 ►처), 전남대학교 ♡단, 전남대학교 ■재단은 업무
 분산 등의 이유로 창업교수의 약정 기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가. 교원의 겸직 허가 관련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반기별로 시행하는 겸직 현황
 조사에서 관련 규정 등을 적극 안내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개인별 교원의 겸직 허가 관련
 소명 사항은 [표 4]와 같다.

[표 4] 겸직 사전 허가 관련 소명 사항

※ 생략

나. 창업교수의 약정 기부 관련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전남대학교 교수창업지원규정」 개정 등을 통해 창업교수 기부금 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개인별 창업교수의 약정 기부 관련 소명 사항은 [표 5]와 같다.

[표 5] 창업교수 기부 관련 소명 사항

※ 생략

또한, 전남대학교 ■재단은 창업기업이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창업교수가 창업기업의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편입 전 감정 평가 등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데 기부 주식의 가치보다 감정 평가 비용이 더 발생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창업교수의 기부금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부 형태를 현행 주식에서 기부 시점 주식 가치만큼의 현금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전남대학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가. 교원의 겸직 허가 관련

전남대학교 P 등 11명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무급 봉사 활동으로 생각하여 겸직을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임기(4년)보다 겸직 허가 기간(2년)이 짧아 임기 후반 2년에 대한 재허가를 놓쳤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타 기관의 직무를 겸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의 겸직 업무를 수행한 점은 처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나. 창업교수의 약정 기부 관련

전남대학교 Q 등 11명의 창업교수가 겸직 만료 후 관련 규정 등에 규정된 겸직 기간 중 평균 보유 주식의 2% 등을 기부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교수 7명 모두 기부 의사를 밝힌 점, ▲처(겸직), ♠단(창업), ►처(쓰), ■재단(기부) 간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쓰 기부 관련 사항이 대학 차원에서 안내 및 관리가 미흡했던 점, 「전남대학교 교수창업지원규정」이 법령이 아닌 전남대학교 자체 규정인 점, 전남대학교가 위 규정의 개정을 통해 창업교수 기부금 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겠다고 한 점 등은 처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전 허가 없이 타 기관의 직무를 겸한 P 등 11명에게 주의 조치하고, (주의)
- ② 향후 겸직 미허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전남대학교 교수창업지원규정」 정비 등을 통해 창업교수에 대한 기부금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 통보, <별도조치> 통보

제 목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대학교 인권센터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성희롱·성교육 및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4대 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국가 기관 등⁷⁾의 장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학에 소속된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이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했다.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포함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 소속 교직원 1,453명은 [표]와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표]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현황

연번	연도	대상 인원	이수 인원	미이수 인원
1	2021년도	3,538명	3,102명	436명
2	2022년도	3,690명	3,051명	639명
3	2023년도	3,449명	3,071명	378명
소계		10,677명	9,224명	1,453명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휴직·연구년·공로연수·퇴사 등 인력 변동으로 인해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향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온라인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직군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대면 교육 등을 적극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향후 소속 교직원이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미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관경고)
- ② ▼센터가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도조치(통보)>

교 육 부

기관주의, 통보

제 목 □사업 퇴직자 연구비 환수 검토 소홀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학술연구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대학의 연구 역량 증진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매년 “□사업 지침(총장 결재)”을 수립하여 신규 임용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1] □사업 지침(교내 신진연구자 지원)

(단위: 천 원)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지원대상	인문/사회/예체능	자연	지원대상	인문/사회/예체능	자연	
2년 과제	1년차	임용 후 2년 이내의 재직 중인 전임교원	10,639	10,639	2020학년도 임용되어 재직 중인 전임교원	10,000	10,000
	2년차		6,000	10,000	2020학년도 1년차 연구가 종료된 재직 중인 전임교원	6,000	10,000

자료: 전남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지원계획에 따라 연구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0~2021학년도 R사업 지침”에 따르면 연구성과물은 1년차 시작 후 6개월 이후부터 2년차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등재(후보) 학술지 이상에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고 전남대학교연구지원시스템(C-RAMS)에 등록하여야 하고, 연구성과물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 중단 및 기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2021학년도 R사업 지침”에 따르면 퇴직 또는 전출 예정 교직원이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연구과제 선정 후 과제등록 단계에서 연구과제 성과물 미제출 시 급여 공제를 통한 연구비 반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R사업에 따라 지원받는 연구자가 연구성과물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회수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R 등 2명은 [표 2]와 같이 R사업에서 연구비 합계 40,639천 원 지원받은 후, 연구비 반납동의서도 제출하였으나 퇴직 후 각각 1년 11개월, 11개월 경과한 2024.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

[표 2] R사업 연구성과물 미제출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소속 (직급)	성명	과제명	회차	연구성과물 제출기한	지원액	비고
2020	-	-	-	1차	2023.12.31.	10,639	퇴직
			-	2차		10,000	
			소계				
2021	-	-	-	1차	2024.12.31.	10,000	퇴직
			-	2차		10,000	
			소계				
합계						40,639	

자료: 전남대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전남대학교는 R 등 2명이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각각 퇴직하였는데도 지급된 연구비(합계 40,639천 원)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여부를 ◀위원회를 거쳐 검토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연구비 회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교원 인사 담당부서에서 R 등 2명이 퇴직한 이후, 연구 담당부서인 ◆과로 퇴직 관련 인사발령을 통보하여 연구성과물과 관련한 검토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건은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 담당부서와 인사 담당부서 간 교원 인사 변동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업무를 협조함으로써 사업 운영 및 성과물 관리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사업으로 지원받아 연구한 교원이 퇴직할 경우 연구비 환수 검토 등 연구 성과물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관주의)
- ②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 퇴직 전 인사 담당부서에서 관련 정보를 ◆과와 공유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주의, <별도조치> 통보

제 목 Ԃ사업 예산 집행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Ԃ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별표>를 따르되, 항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업별 기본계획 또는 지침으로 정하며, 「Ԃ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이하 “집행 및 관리 기준”이라 한다)」(교육부·■)에 따르면 사업비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은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등이고,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은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2017. 7. 26. 시행) 제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타당성 조사의 절차·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 조사 전문 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B사업 타당성 조사비용 등을 집행하고자 경우에는 「집행 및 관리 기준」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B사업 예산 및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B사업 타당성 조사 수수료(용역비용) 1억 2천 7백만 원을 2021. 7. 2. &으로 집행(자금 이체)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타당성 조사 수수료는 ★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집행 및 관리 기준」이 2021. 9. 개정되어 사업비에서 타당성 조사 경비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업무를 소홀히 한 ○과 및 ★센터에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별도조치(통보)>

교 육 부

기관주의, 주의, 통보

제 목 入사업 사업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學단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 學단(이하 “學”)은 2020년부터 소속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성과 향상 도모를 위해 매년 「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연구자 및 연구소에 대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 받아 심사를 거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入사업은 學단이 소속 연구자 및 연구소가 수주한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비에서 공제한 간접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한 연구자 및 연구소의 몫으로 연구비의 간접비에서 20%를 공제한 금액만큼 해당 연구자 및 연구소에 배정하여 적립한 후 적립된 연구비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를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순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 고시) 제12조, 제15조 및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제23조에 따르면 순단장은 순단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고,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연구비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스사업 안내”에 따르면 사업 지원 대상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소⁸⁾로 지원대상에 제한이 없고 사업 신청서 접수 및 심사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비 사용 범위는 사업(연구) 수행과 관련된 국내·외 여비, 회의비,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문가활용비, 논문 게재료, 사무용품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에 집행이 가능하나 인건비, 수당, 자산취득비, 학회연회비, 학회종신회비 등은 집행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순단은 스사업을 추진할 때, 「순단회계처리규칙」,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및 “스사업 안내”에 따라 기 공고한 사업 추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 관리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사업과제 지원대상 선정 부적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순단에서 시행한 “스사업 안내”에 따르면, 사업과제 지원 대상은 전남대 소속 전임 교원 또는 비전임 교원으로서 개인 단위 또는 그룹 단위(연구자 2인 이상)와, 전남대 조직 설치 규정에 따른 연구소로 되어 있다.

그런데, 순단은 [표 1]과 같이 스사업 지원 대상 선정 당시에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8) (연구자) 전남대·순단 소속의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으로서 개인 단위 또는 그룹단위(연구자 2명 이상)
(연구소) 전남대학교 조직 설치 규정 별표2 「전남대학교에 두는 연구소 등」의 연구소

수주한 실적이 없어 그에 따른 간접비를 재원으로 한 배정 적립금이 없는 연구자 및 연구소는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여 당초 사업 안내와는 다르게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다.

[표 1] 2020~2024년 사사업 지원대상 선정 현황

(단위: 명, 개, 백만 원)

연도	선정된 연구자(1인~3인 이상)				선정된 연구소				지원 총액
	연구자 수			지원 금액	지원 기관			지원 금액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 통한 간접비 적립금이 있는 연구자 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 통한 간접비 적립금이 없는 연구자 수	소계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 통한 간접비 적립금이 있는 기관 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 통한 간접비 적립금이 없는 기관 수	소계		
2020	325	-	325	1,342	3	-	3	73	1,415
2021	312	-	312	1,596	2	-	2	115	1,711
2022	390	-	390	2,192	1	-	1	120	2,312
2023	442	-	442	2,789	2	-	2	180	2,969
2024	411	-	411	2,432	2	-	2	180	2,612

나. 사업과제 집행 부적절

1) 사사업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타 교외 연구비 집행 불인정액 대납

♣단은 S 등 9명의 연구자가 교외 과제를 수행하면서 집행한 연구비 중 집행이 불인정되어 반납을 요청 받은 금액에 대해 해당 연구자의 신청을 받아 그 연구자의 사사업 적립금에서 총 10건 66,192,692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타 교외과제 집행 불인정액 항목도 사사업 비목별 사용 용도에 따라 집행할 수 없는 인건비,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동일 연구자의 교외 연구 회의비와 사사업 연구 회의비 중복 집행

♣단은 T 등 3명이 교외 연구과제 회의와 사사업 연구과제 회의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총 7회 개최하고 회의비 3,652,000원을 청구한 데 대해 집행하였다.

또한, ♣단은 U가 2023. 2. 22.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ㄱ사업 연구과제 회의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 과제 회의를 각각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후 2023. 3. 14.에 ▣ 과제 회의비 159,450원을 ♣단에 신청하였고, 2023. 5. 12.에는 같은 날 개최하였던 ㄱ사업 연구과제 회의비를 신청하면서 위 2023. 3. 14. ▣ 회의비를 신청할 당시 사용했던 카드 전표 복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 데 대해 집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가. 사업과제 지원 대상 선정 부적절

① 관계기관 의견

♣단은 ㄱ사업이 일정 수준의 연구력을 갖춘 연구자의 보다 높은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도전적 연구 촉진과 함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을 취지로 하는 사업으로 연구 사업 수주 실적이 있는 교원 위주로 추진되었다고 하면서 교육부 감사 이후 2024년 9월 말부터 동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2025년에는 동 예산을 ㄱ사업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단은 2020년부터 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 대상이 전남대 및 ♣ 소속 전임 교원 또는 비전임 교원뿐 아니라 전남대 조직 설치 규정에 따른 연구소는 모두 제한 없이 대상이 되고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되면 연구과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교내 전 기관에 안내하였다. 그러나 정작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주 실적이 없는 교원 및 연구소는 처음부터 배제한 채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 실적이 있는 교원 및 연구소에 대해서만 연구비를 지원한 것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사업과제 집행 부적절

1) 스사업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타 교외 과제 연구비 집행 불인정액 대납

① 관계기관 의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라 연구자가 교외 과제 연구개발비 집행 불인정 반납 금액을 요청받은 데 대해 납부하지 않게 되면 전남대 숏단에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속 대학 전체 교원들이 교외 과제 신규 신청 시 과제 선정평가에 불리하게 대우받을 수 있어 해당 연구자로부터 반납금 집행 신청을 받아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는 판단으로 해당 연구자의 스사업 배정 적립금에서 반납금을 집행하고 집행금액만큼 차감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결과

숏단이 연구자의 교외 과제 집행 불인정액 반납 요청 금액을 해당 연구자의 스사업 적립금에서 대납한 것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스사업의 당초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연구자의 해당 스사업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숏단에서 2020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스사업 시행 및 신청 안내 공문에서 일관되게 안내한 스사업 비목별 사용 용도 및 계상 기준과도 맞지 않아 교외 과제 집행 불인정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남대 소속 연구자들이 교외 과제 신청 시 불리할 수 있어 대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동일 연구자의 교외 과제 회의비와 스사업 연구과제 회의비 중복 집행

① 관계기관 의견

개별 건 소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생략

② 검토결과

소명한 자료를 살펴보면, 착오 또는 실수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2건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었을 뿐 실제 회의시간은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방적인 주장이나 회의록을 수정하여 제출한 것 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기 곤란하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사사업 과제 선정 및 집행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소단에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기관주의)
- ②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사사업과 타 교외 과제 사업 회의를 중복 개최하고 회의비를 이중 청구한 T 등 3명과 사사업 회의비 청구서에 타 교외 과제 사업 회의비 영수증을 첨부한 U에게 주의 조치하고 (주의)
- ③ 부적절한 사사업비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 등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주의, 통보, 통보(인사자료)

제 목 연구비 중앙관리 미 실시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 ♣단은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명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며, 연구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연구비 중앙관리 체제를 원칙으로 연구비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제2조와 제8조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와 ♣단장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연구과제의 신청은 반드시 ♣단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단장은 연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기관과의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구에 의해 ♣단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속부설연구기관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소속부설연구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단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연구책임자 및 ♣단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등록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C-RAMS)에 과제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단장과 연구책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가 ♣단을 통해 계약 및 관리되도록 연구비 중앙관리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 ◆ 및 △는 ♣단장으로부터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지 않고 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원된 연구비 합계 905,310천 원을 ♣단을 통해 중앙관리하지 않고 직접 관리·집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 및 △ 주관 일부 연구과제는 [표]와 같은 이유로 연구과제 중앙관리의 누락이 발생하였으나, 종합감사 후 지원기관과 업무 교류를 추진하여 이후 연구계약 체결을 ♣단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연구과제 중앙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 및 △에서 개별

관리된 사업의 사업기간은 1년 이내로 해당 사업비는 집행정산을 완료하여 각 지원기관에 보고를 완료하였고 향후 연구과제 중앙관리 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모니터링, 연구자 교육 강화, 지원기관과의 소통 추진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연구비 중앙관리 누락 발생 사유

연구소명	지원기관	연구비 중앙관리 누락 사유
◆		※ 생략
△		

② 검토 결과

전남대학교는 지원기관의 판단 등에 따라 연구비 중앙관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연구책임자와 수단 모두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연구비를 중앙관리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 및 △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정산을 완료하거나 지원기관의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정산을 완료한 점과 종합감사 이후 수단과 해당 지원기관과의 연구계약 체결을 통해 연구비 중앙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점은 처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중앙관리하지 않은 연구책임자 2명(V, W)에게 주의 조치하고, (주의)
- ② X는 퇴직한 바 있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인사자료)]
- ③ 연구비 중앙관리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비 중앙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 문책, 시정, 통보, <별도조치>통보

제 목 ○사업 사업비 등 사적 사용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단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 ♣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 고시) 등에 따라 ♣단 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단회계처리규칙」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단의 단장은 ♣단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를 요구 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부 감사규정」(교육부 훈령) 제9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감사 활동 수행기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또는 그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공무원 및 직원, 그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남대학교 ♣단 취업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모든 직원 및 계약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 ♣단 소속 교직원은 「♣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단 회계 업무는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감사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전남대학교 ♣단 사업 예산 수립 및 집행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Y는 ♣단 예산을 집행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사업 사업비 및 ♣단 예산(간접비)에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45회에 걸쳐 합계 18,396천 원을 본인과 가족 식사 비용 지출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후, 사업 등 업무 관련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Y는 교육부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교육부가 법인카드(회의비) 사용내역 등을 요구하자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이 감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양도록 총 206건(사적 사용 45건, 합계 18,396천 원 포함), 합계 90,041,850원을 고의로 누락하여 교육부에 허위 제출하였다.

한편, ♀단은 Y가 사업비(예산)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사자료를 허위 제출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Y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45건, 합계 18,396천 원이 감사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해 엑셀 자료 정리 과정에서 총 206건, 합계 90,041,850원을 삭제하여 감사자료로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다수의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해당 ○사업 사업단 자료와 카드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비교 확인하지 못해 최종자료에 누락이 발생하였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전남대학교는 개인 용도 사용(45건)을 제외한 161건, 합계 71,645,850원 삭제 건에 대해서 Y로부터 사적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필요시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관련자 의견

Y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가족과 집안에 대해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선택을 잘못하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45건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③ 검토결과

교육부는 전남대학교에 종합감사 기간 동안 확인된 Y의 사업비 등 사적 사용

내역 45건, 합계 18,396천 원 외에 감사자료에서 누락되었던 총 161건, 합계 71,645,850원에 대해 대학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남대학교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당사자 Y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점검은 실시하지 않았고 사적 사용이 없으며, 필요시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일어난 Y의 비위행위가 교육부 종합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전남대학교가 2025년 현재 까지도 추가적인 확인 및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회계처리 및 관리 업무를 해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Y가 ○사업 사업비 및 ♡단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사자료를 허위 제출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요구 양정

Y는 전남대학교 ♡단 사업 예산 수립 및 집행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장으로서 ♡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며 ♡단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본인과 가족의 식사비용 지출을 위해 사업비를 사적 사용하고 감사자료를 허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전남대학교 ♡단 회계처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시켰다.

이러한 Y의 행위는 「전남대학교 ♡단 취업규칙」 제37조 제1항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단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 2. ♡단의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13.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와 관련한 비위에 해당되며,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중징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순법」, 「순단회계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처리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순단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 ② 「순법」, 「순단회계처리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비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감사자료를 허위 제출한 Y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 조치하며, (문책)
- ③ 사적으로 사용한 사업비 등 합계 18,396천 원을 Y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시정)
- ④ 향후 유사 또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단 회계처리 및 관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도조치(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 시정, 통보, <별도조치> 통보

제 목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단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대학교 ◎과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대학회계에서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전남대학교 ♣단은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단 회계에서 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및 제8조의2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며,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단장은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여야 하고, 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출장신청서는 사전에 출장 관련 증빙(학회, 강좌, 워크숍 프로그램 사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표 1]과 같이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표 1] 국내출장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비 고
연구책임자	출장신청서(학장 결재)	여비내역서
연구(보조)원	출장신청서(연구책임자 결재)	

따라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출장을 수행하는 교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신청하여야 하며, ◎과와 ♣단은 여비 정산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 Z 등 교원 9명은 개인별로 동일한 출장 건에 대해 2021. 1월부터 2024.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11건의 여비 합계 1,304,830원을 ◎과와 ♣단에 중복 신청하였으며, ◎과와 ♣단은 여비 중복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연구 관련 출장 후 출장비 정산 과정에서 단순 오인으로 인해 출장비를 중복 집행하였으나, 중복 지급받은 금액은 대학회계 및 ♣단 회계로 반납 조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단의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는 연구과제별로 출장여비 중복 집행을 방지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나, 연구비관리시스템과 대학 코러스(KORUS)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두 시스템간 중복집행 방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학 코러스(KORUS) 시스템의 출장신청 기능을 개선하고,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출장 관련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여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과 및 ♣단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 ② 중복 지급된 여비 합계 1,304,830원을 Z 등 9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 (시정)
- ③ 향후 여비 중복 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도조치(통보)>

교 육 부

기관주의, 통보(시정완료), 통보

제 목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미지급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숭단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 숭단(이하 “숭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남대학교 숭단 사무분장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①팀에서 기술료⁹⁾ 등의 수입 관리 및 사용(집행, 정산 등), 기술이전¹⁰⁾과 사업화¹¹⁾ 촉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징수한 기술료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에 사용

9)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제9호)

10)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

11)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하여야 한다. 징수한 기술료 중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은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규정」 제19조 및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운영 지침」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르면 기술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 중 외부기관의 공동 소요 지분, 기술이전 중개자¹²⁾의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은 발명자 보상금으로 100분의 60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하우 기술이전의 경우 100분의 70까지, 발명자가 발굴한 기업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 100분의 65까지 지급하고, 기술이전 기여자¹³⁾ 보상금은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명자 보상금이 100분의 60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0 미만으로 지급하고, ♣단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여자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기여자 보상위원회는 매년 심의 대상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의 기술이전 실적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대해 심의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월 단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여자 보상위원회 심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그리고 「♣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 고시)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수익은 동 수익이 실현된 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은 동 비용이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단은 연구개발성과를 기술이전 받으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한 후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고 ♣단 기여자 보상위원회에서는 연 1회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대해 심의하여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게 징수한

12) ♣단이 보유한 기술을 중개·알선하기 위해 ♣단과 계약을 맺은 외부 중개기관 또는 중개자

13) ♣단에 1개월 이상 근무한 교직원으로서 발명의 창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

기술료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단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여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게 지급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하고도 기여자 보상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지 않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채 3년간 총 385건 합계 469,232,312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한편, ♣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전남대학교 지식재산권 운영지침」 제15조에서는 발명자 보상금이 100분의 60을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0 미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맞지 않게 내부 지침을 정하고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단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하여 내부 의견 수렴 및 조정, TF 운영 및 법률 검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집행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실지감사 당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부터 3년간 미지급한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4. 12. 17.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2024. 12. 20.자로 모두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상금 집행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매 회계 연도마다 정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기여자 보상금 지급 비율과 관련해서는 ○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여자 대상자 범위에 “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에 소속된 자인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로서는 해당 기술이전에 통상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노력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통상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기여도 판단에 따라 5~10%를 지급하고 있고 이런 사정으로 많은 대학·출연(연)이 기여자 보상금을 10%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최근 ○부에서 기여자 보상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반영하여 전남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결과

♣단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견 수렴, TF 운영, 법률 검토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소요되어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증빙자료에 따르면 TF 운영은 2023. 10. 6.에 이르러 계획을 수립했고, 법률 자문은 2024. 8. 8.이 되어서야 추진한 것으로 볼 때, 그간 계속된 내부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소명을 고려하더라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예산을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매년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공립 및 사립대 ♣단 회계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재단에 따르면 「♣단회계처리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함이 원칙으로 일부 기술료 징수가 지연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3년간 매년 1억여 원이 넘는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정당한 기여금 수령자의 권리를 고려하고 건전한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 지적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 비율과 관련하여서는 주무 부처인 ○부에서 제도 개선 준비 중으로 확인되어 향후 제도 개선에 맞추어 기여자 보상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3년간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도 타당한 이유 없이 집행하지 않은 담당부서(○팀)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기관주의)**
- ②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모두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통보(시정완료)]**
- ③ 향후 ○부의 기술이전 관련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체계에 맞춰 보상금 지급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육 부

기관경고, 통보, <별도조치> 통보

제 목 교원의 사단법인(●) 겸직 및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 ■과는 「전남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복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남대학교 ◎는 「같은 규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 각종 물품 계약 및 회계직 공무원 임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남대학교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은 전남대학교와 독립된 기관으로 조직, 인사, 회계 등을 전남대학교와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교원의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남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르면 “겸직”이란 함은 본교의 교원이 본교 이외 타 기관에서 다른 직무를 겸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지침」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비영리단체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나. 국유재산 사용허가 방법

「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 제7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행정재산¹⁴⁾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¹⁵⁾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에 부치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4) 「국유재산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으며,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함.
15)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다. 각종 인쇄물 계약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에 따르면 총장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 교원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거나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하여야 했고, 전남대학교는 ●이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사용자를 경쟁입찰에 부쳐 선정한 후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하여야 했으며,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쇄물 제작·출판 등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요물량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부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 업무 겸직

그런데 전남대학교 AA 등 13명은 2021. 1. 15.부터 2024. 9. 감사일 현재까지 총장의 허가나 소속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 업무를 겸직하였다.

나. ●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계약 방법 부적정

한편, 전남대학교는 2019. 1. 1. 국유재산인 전남대학교 생활관 공용동 및 누리관 일부 공간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표 1]과 같이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수의계약(사용기간: 2019. 1. 1. ~ 2024. 9. 감사일 현재)의 방법으로 ●에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하였다.

[표 1] 2019년, 2024년 국유재산 수의계약 현황(5년 단위 계약)

(단위: 원)

계약연도	대상 재산		사용 기간	연 사용료 (VAT별도)	총 사용료 (VAT별도)	비고
	위치	면적(m ²)				
2019	-	-	2019. 1. 1. ~ 2023. 12. 31.	16,231,350	81,156,750	5년 기준
	-	-				
계					81,156,750	
2024	-	-	2024. 1. 1. ~ 2028. 12. 31.	10,819,290	54,096,450	5년 기준
	-	-				
	-	-				
	-	-		9,526,910	47,634,550	
	계					

다. ●과 각종 인쇄물 계약 방법 부적정

또한, 전남대학교는 [표 2]와 같이 2021년 회계연도부터 2024. 9. 감사일 현재 까지 매년 2천만 원 이상 반복 발생하는 각종 인쇄물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총 444건 합계 917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표 2] ●과 체결한 인쇄물 제작·출판 등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

(단위: 원)

회계 구분	회계연도	수의계약			사용내역
		예산부서	건수	지출액	
대학회계	2021	-	130	256,816,200	인쇄, 복사, 출판 등
대학회계	2022	-	140	284,761,000	인쇄, 복사, 출판 등
대학회계	2023	-	142	286,983,950	인쇄, 복사, 출판 등
대학회계	2024. 감사일 기준	-	32	88,968,500	인쇄, 복사, 출판 등
합계			444	917,529,650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 업무 겸직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수용하면서 ●이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나, 그 간 사실상 전남대학교 부속시설과 같이 운영되어 구성원들은 ●이 별도의 법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또한 인지하지 못하다가 감사 기간에 이를 인지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으며, 향후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겸직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나. ●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위한 계약 방법 부적정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수용하면서 ● 정관에 근거하여 그 설립 목적과 성질이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사용 허가하였으며, 향후 차기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과 각종 인쇄물 계약 방법 부적정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수용하면서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편성·집행하고 각 회계공무원을 임명한 후 부서별 분임재무관이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점과 각 부서의 교수 등 연구자마다 요구하는 인쇄물의 특성 및 사양, 집행 시기, 금액 등이 상이하여 단가계약을 체결·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 결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 업무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변함없으나, 교수들이 개인의 희망보다는 보직자로서 「● 정관」 제10조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되거나 이사장의 지명으로 대부분 무보수로 겸직하고 있는 점, ●이 사실상 전남대학교 부속시설과 같이 운영되어 ●이 전남대와는 별개의 기관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점, 인쇄물의 경우 연구자마다 요구하는 인쇄물의 특성, 사양, 집행 시기 등이 상이하여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업무를 개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소속 교직원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사례와 국유 재산 사용허가 및 각종 인쇄물 계약을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관경고)
- ② 향후 겸직 미허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쇄물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계약하여 구매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도조치(통보)>

교 육 부

<별도조치> 통보

제 목 ■재단 기부금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보통재산으로 편입·사용
등 기부받은 재산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재단

조 치 기 관 ◉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 허가를 받아 전남대학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2017. 5. 19.부터 2024. 4. 5.까지 ‘ㄷ’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고 관리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기부받은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사용 관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 공익법인업무편람」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처분·사용이 불가능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비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적으로 “보통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기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도·증여 관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부받은 기부금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였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기부금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이사회 심의 결정을 받아야 했고, 기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각금액을 증여하고자 하였다면 이사회 심의 결정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기부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보통재산으로 편입 및 사용·증여

■재단은 2020. 5. 26.부터 2024. 9. 감사일 현재까지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및 건물'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주무관청 (☉)의 승인 없이 "보통재산"으로 편입·관리하였다.

또한, ■재단은 2017. 5. 19.부터 2021. 12. 31.까지 'ㄷ'을 목적으로 기부받은 기부금 총 638,137천 원 중 141,885천 원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사용하였으며, 2023. 12. 27. 보통재산으로 편입 승인을 받지 않은 기부금 496,252천 원을 □□로 증여하였다.

나. 기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증여

한편, ■재단은 2017. 5. 19.부터 2018. 4. 12.까지 주무관청(☉)으로 부터 보통 재산으로 편입 승인을 받지 않은 "기본재산"인 기부금 128백만 원(기부 목적: ㄷ)을 2018. 4. 12.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취득한 부동산을 ■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표 1]과 같이 2024. 4. 5.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관리해야 할 부동산을 관할청의 허가 없이 매도하고, 2024. 5. 8. 매각대금 143백만 원을 □□로 증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1] 기부금으로 취득·매도·증여한 재산

구분	주소(용도)	취득 금액 (취득일자)	매각 금액 (매도일자)	증여 금액 (증여일자)	비고
부동산 (아파트)	- (-)	128백만 원 (2018. 4. 12.)	143백만 원 (2024. 4. 5.)	143백만 원 (2024. 5. 8.)	매도·증여 시 관할청 미허가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가. 기부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보통재산으로 편입 및 사용·증여

■재단은 감사 내용을 수용하면서 기부로 취득한 유가증권 및 부동산은 향후 기부자 및 주무관청과 협의를 통해 기본재산으로 편입 조치 등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2022년 이전 'ㄷ'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별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외 사용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나 통상 '보통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과 2018년 말 ◉의 지도·감독 이후 2022년부터는 주무관청과 협의 및 재단 조치계획에 따라 같은 목적의 기부금에 대해 승인을 신청하여 ◉이 '보통재산으로 승인'을 했다는 점에서 '보통재산'으로 이미 간주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기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증여

2022. 9. 2. 2018년에 취득한 부동산 처분 절차에 대해 ◉에 문의했을 때 “해당 부동산은 보통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니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에서 2018년에 'ㄷ'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주무관청에서 '보통재산'으로 승인하였거나 보통재산으로 이미 간주한 재산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 결과

가. 기부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보통재산으로 편입 및 사용·증여

2018년 11월 '■재단의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지도·점검일 이후부터는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기부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재단은 감사일 현재까지도 “기부금과 유가증권 및 건물(부동산)”을 주무관청(☉) 승인 없이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였고, ‘ㄷ’을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638,137천 원 중 141,885천 원을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보통재산”으로 편입·사용하였고, ☉의 지도·점검(2018. 11.) 이후 관련 법령을 인지하였음에도 주무관청으로부터 보통재산으로 편입·승인을 받지 않은 기부금 496,252천 원을 □□로 증여하였다는 점에서 기부금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주무관청(☉)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

나. 기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증여

그리고 2018. 4. 12. 부동산 취득 당시 ‘ㄷ’을 위해 별도의 사단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취득 부동산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산으로 보이므로 “기본재산”으로 관리했어야 할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재단이 ☉에 질의한 내용에 부동산 취득 재원이 ‘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보통재산으로 편입된 기부금’이라는 중요 정보를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 담당자’의 회신 내용은 주무관청 승인 없이 “보통재산으로 임의 편입한 기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처분 절차에 대해 답변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통재산으로 편입된 부동산”의 처분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ㄷ’ 등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단법인’이 이미 설립된 점,

해당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수령한 기부금을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 이관 등의 조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재단 담당자가 부동산 처분 절차를 관할청에 질의하는 등 법령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점, '해당 기부금의 기부 목적에 부합하는 설립 목적'을 가진 '사단법인'으로 기부금이 결국 이관된 점 등은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별도조치(통보)>

교 육 부

<별도조치> 통보

제 목 쓰에서 교직원 경조사비 등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단

조 치 기 관 ◉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대학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 설립 허가를 받아 ■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남대학교 학칙」 제18조에 따르면 전남대학교의 발전과 교육·연구활동,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을 두며, ■재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재단 정관」 제4조 및 「■재단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출연된 기금은 정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와 출연의도에 합치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지양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서 기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기부 당시 목적에 맞게 쓰를 집행하여야 했고, 기관의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 집행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재단은 2021. 7. 15. 교직원 경조사비 및 교직원 격려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현금 3,000천 원을 개산급¹⁶⁾으로 집행하는 등 [표 1]과 같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교직원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17,450천 원을 집행하였다.

[표 1] ■재단회계에서 교직원 경조사비 등 집행 현황

(단위: 천 원)

지출일자	건명	지출액	반납액	실집행액	입금자	비고
2021. 2. 24.	교직원 경조사비 및 교직원 격려	3,000	-	3,000		
2021. 7. 15.	교직원 경조사비 및 교직원 격려	3,000	-	-		
2021. 12. 31.	「반납」교직원 경조사비 및 교직원 격려	-	1,000	2,000		
2022. 2. 24.	교직원 경조사비 및 교직원 격려	3,000	-	3,000		
2022. 10. 21.	교직원 경조사비 및 교직원 격려	3,000	-	-		
2022. 12. 29.	「반납」교직원 경조사비 및 교직원 격려	-	1,250	1,750		
2023. 3. 3.	교직원 경조사비 및 교직원 격려	3,000	-	3,000		
2023. 7. 27.	교직원 경조사비 및 교직원 격려	3,000	-	-		
2023. 12. 22.	「반납」교직원 경조사비 및 교직원 격려	-	1,300	1,700		
2024. 3. 18.	교직원 경조사비 및 교직원 격려	3,000	-	3,000		
합계		21,000	3,550	17,450		

관계기관 의견

■재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적한 내용에 따라 향후 정관 목적인 전남

16) 법제처 법령정의사전에 따르면,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함.

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기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에게만 예산을 지출하고 정관 사업목적 및 기탁자 출연 의도 등에 합치되도록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별도조치(통보)>

교 육 부

<별도조치> 통보

제 목 ㅅ에서 보직 수행경비 및 유류비 등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재단

조 치 기 관 ○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 설립 허가를 받아 ■■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재단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단 정관」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법인은 전남대학교 ■■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1.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2.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3. 도서구입, 출판 및 연구기자재 구입, 4.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육연구 지원, 5. 교육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관리, 6. 기타 법인 및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며,

「**■** 공인법인업무편람(2019)」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사용이 불가능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비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재단은 [별표 1] “**■** 보직 수행경비 및 유류비 지급 현황”과 같이 2019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교직원 35명에게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유류비 및 보직 수행 경비로 합계 112,32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또한, 위 재단은 [별표 2] “**■** 명예교수 매월 생일자 감사선물 지급 현황”과 같이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명예교수 감사 선물 제공’ 명목으로 **■** 명예교수 생일 선물 구입비 합계 5,610천 원을 지출하고, [별표 3] “**■** 명절 감사선물 지급 현황”과 같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 동창회 및 교직원 감사 선물’ 명목으로 명절 선물구입비 합계 108,890천 원을 집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재단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집행을 중단하였고 2025학년도 ■재단 예산에도 미편성하였으며 향후 재단 운영을 위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별도조치(통보)>

[별표 1]

■ ■ 보직 수행경비 및 유류비 지급 현황 (2019. 9. ~ 2024. 8.)

(단위: 천원)

연번	소속	보직	보직수행경비 지급내역							지원내역
			직급	성명	단가	기간	지급 개월	지급액	지급명	
1	■ ■						6	9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2	■ ■						30	4,5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24	4,8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3	■ ■						6	9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4	■ ■						30	4,5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24	4,8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5	■ ■						6	9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6	■ ■						6	9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7	■ ■						6	9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8	■ ■						30	4,5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9	■ ■						6	9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10	■ ■						30	4,5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11	■ ■						24	3,6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30	6,0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12	■ ■						6	9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13	■ ■						12	1,8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14	■ ■						24	3,6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15	■ ■						24	3,6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16	■ ■						24	3,6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17	■ ■						18	2,7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18	■ ■						12	1,800	업무 추진 지원비	유류비 지원 (영수증제출시)
							24	4,8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19	■ ■						24	8,52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20	■ ■						24	4,8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21	■ ■						24	4,8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22	■ ■						24	4,8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23	■ ■						24	4,8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24	■ ■						1	2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연번	소속	보직	보직수행경비 지급내역							지급명	지원내역
			직급	성명	단가	기간	지급 개월	지급액			
25	■						21	4,2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 (매월지급)	
26	■						24	4,8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27	■						2	4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28	■						6	1,2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29	■						6	1,2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30	■						6	1,2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31	■						6	1,2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32	■						6	1,2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33	■						6	1,2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34	■						6	1,2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35	■						6	1,200	교수보직수행경비	보직업무 수행 경비 지원(매월지급)	
합계								112,320			

[별표 2]

☐☐ 명예교수 생일자 감사선물 지급 현황(2022. 3. ~ 2023. 12.)

(단위: 원)

연번	소속	성명	지급내역	지급연월	지급액	비고
1	☐☐		떡세트	2022. 3.	36,000	
2	☐☐		떡세트	2022. 3.	36,000	
3	☐☐		떡세트	2022. 3.	36,000	
4	☐☐		떡세트	2022. 3.	36,000	
5	☐☐		떡세트	2022. 3.	36,000	
6	☐☐		떡세트	2022. 3.	36,000	
7	☐☐		떡세트	2022. 3.	36,000	
8	☐☐		떡세트	2022. 4.	36,000	
9	☐☐		떡세트	2022. 4.	36,000	
10	☐☐		떡세트	2022. 4.	36,000	
11	☐☐		떡세트	2022. 4.	36,000	
12	☐☐		떡세트	2022. 4.	36,000	
13	☐☐		떡세트	2022. 4.	36,000	
14	☐☐		떡세트	2022. 5.	36,000	
15	☐☐		떡세트	2022. 5.	36,000	
16	☐☐		떡세트	2022. 5.	36,000	
17	☐☐		떡세트	2022. 5.	36,000	
18	☐☐		떡세트	2022. 5.	36,000	
19	☐☐		떡세트	2022. 5.	36,000	
20	☐☐		떡세트	2022. 5.	36,000	
21	☐☐		떡세트	2022. 5.	36,000	
22	☐☐		떡세트	2022. 6.	36,000	
23	☐☐		떡세트	2022. 6.	36,000	
24	☐☐		떡세트	2022. 6.	36,000	
25	☐☐		떡세트	2022. 6.	36,000	
26	☐☐		떡세트	2022. 6.	36,000	
27	☐☐		떡세트	2022. 7.	38,000	
28	☐☐		떡세트	2022. 7.	38,000	
29	☐☐		떡세트	2022. 7.	38,000	
30	☐☐		떡세트	2022. 7.	38,000	
31	☐☐		떡세트	2022. 8.	38,000	
32	☐☐		떡세트	2022. 8.	38,000	
33	☐☐		떡세트	2022. 8.	38,000	
34	☐☐		떡세트	2022. 8.	38,000	
35	☐☐		떡세트	2022. 8.	38,000	
36	☐☐		떡세트	2022. 8.	38,000	
37	☐☐		떡세트	2022. 9.	38,000	
38	☐☐		떡세트	2022. 9.	38,000	
39	☐☐		떡세트	2022. 9.	38,000	
40	☐☐		떡세트	2022. 9.	38,000	
41	☐☐		떡세트	2022. 9.	38,000	
42	☐☐		떡세트	2022. 9.	38,000	
43	☐☐		떡세트	2022. 10.	38,000	
44	☐☐		떡세트	2022. 10.	38,000	
45	☐☐		떡세트	2022. 10.	38,000	
46	☐☐		떡세트	2022. 10.	38,000	
47	☐☐		떡세트	2022. 10.	38,000	
48	☐☐		떡세트	2022. 10.	38,000	
49	☐☐		떡세트	2022. 11.	38,000	
50	☐☐		떡세트	2022. 11.	38,000	

연번	소속	성명	지급내역	지급연월	지급액	비고
51	■		떡세트	2022. 11.	38,000	
52	■		떡세트	2022. 11.	38,000	
53	■		떡세트	2022. 11.	38,000	
54	■		떡세트	2022. 11.	38,000	
55	■		떡세트	2022. 11.	38,000	
56	■		떡세트	2022. 11.	38,000	
57	■		떡세트	2022. 11.	38,000	
58	■		떡세트	2022. 12.	38,000	
59	■		떡세트	2022. 12.	38,000	
60	■		떡세트	2022. 12.	38,000	
61	■		떡세트	2022. 12.	38,000	
62	■		떡세트	2022. 12.	38,000	
63	■		떡세트	2022. 12.	38,000	
64	■		떡세트	2022. 12.	38,000	
65	■		떡세트	2022. 12.	38,000	
66	■		떡세트	2023. 1.	38,000	
67	■		떡세트	2023. 1.	38,000	
68	■		떡세트	2023. 1.	38,000	
69	■		떡세트	2023. 1.	38,000	
70	■		떡세트	2023. 1.	38,000	
71	■		떡세트	2023. 1.	38,000	
72	■		떡세트	2023. 1.	38,000	
73	■		떡세트	2023. 2.	38,000	
74	■		떡세트	2023. 2.	38,000	
75	■		떡세트	2023. 2.	38,000	
76	■		떡세트	2023. 2.	38,000	
77	■		떡세트	2023. 2.	38,000	
78	■		떡세트	2023. 3.	38,000	
79	■		떡세트	2023. 3.	38,000	
80	■		떡세트	2023. 3.	38,000	
81	■		떡세트	2023. 3.	38,000	
82	■		떡세트	2023. 3.	38,000	
83	■		떡세트	2023. 3.	38,000	
84	■		떡세트	2023. 3.	38,000	
85	■		떡세트	2023. 4.	38,000	
86	■		떡세트	2023. 4.	38,000	
87	■		떡세트	2023. 4.	38,000	
88	■		떡세트	2023. 4.	38,000	
89	■		떡세트	2023. 4.	38,000	
90	■		떡세트	2023. 5.	38,000	
91	■		떡세트	2023. 5.	38,000	
92	■		떡세트	2023. 5.	38,000	
93	■		떡세트	2023. 5.	38,000	
94	■		떡세트	2023. 5.	38,000	
95	■		떡세트	2023. 5.	38,000	
96	■		떡세트	2023. 5.	38,000	
97	■		떡세트	2023. 6.	38,000	
98	■		떡세트	2023. 6.	38,000	
99	■		떡세트	2023. 6.	38,000	
100	■		떡세트	2023. 6.	38,000	
101	■		떡세트	2023. 6.	38,000	
102	■		떡세트	2023. 6.	38,000	
103	■		떡세트	2023. 6.	38,000	
104	■		떡세트	2023. 7.	38,000	
105	■		떡세트	2023. 7.	38,000	
106	■		떡세트	2023. 7.	38,000	

연번	소속	성명	지급내역	지급연월	지급액	비고
107	■		떡세트	2023. 7.	38,000	
108	■		떡세트	2023. 7.	38,000	
109	■		떡세트	2023. 8.	38,000	
110	■		떡세트	2023. 8.	38,000	
111	■		떡세트	2023. 8.	38,000	
112	■		떡세트	2023. 8.	38,000	
113	■		떡세트	2023. 8.	38,000	
114	■		떡세트	2023. 8.	38,000	
115	■		떡세트	2023. 8.	38,000	
116	■		떡세트	2023. 9.	38,000	
117	■		떡세트	2023. 9.	38,000	
118	■		떡세트	2023. 9.	38,000	
119	■		떡세트	2023. 9.	38,000	
120	■		떡세트	2023. 10.	38,000	
121	■		떡세트	2023. 10.	38,000	
122	■		떡세트	2023. 10.	38,000	
123	■		떡세트	2023. 10.	38,000	
124	■		떡세트	2023. 10.	38,000	
125	■		떡세트	2023. 10.	38,000	
126	■		떡세트	2023. 10.	38,000	
127	■		떡세트	2023. 10.	38,000	
128	■		떡세트	2023. 10.	38,000	
129	■		떡세트	2023. 10.	38,000	
130	■		떡세트	2023. 10.	38,000	
131	■		떡세트	2023. 11.	38,000	
132	■		떡세트	2023. 11.	38,000	
133	■		떡세트	2023. 11.	38,000	
134	■		떡세트	2023. 11.	38,000	
135	■		떡세트	2023. 11.	38,000	
136	■		떡세트	2023. 11.	38,000	
137	■		떡세트	2023. 11.	38,000	
138	■		떡세트	2023. 11.	38,000	
139	■		떡세트	2023. 12.	38,000	
140	■		떡세트	2023. 12.	38,000	
141	■		떡세트	2023. 12.	38,000	
142	■		떡세트	2023. 12.	38,000	
143	■		떡세트	2023. 12.	38,000	
144	■		떡세트	2023. 12.	38,000	
145	■		떡세트	2023. 12.	38,000	
146	■		떡세트	2023. 12.	38,000	
147	■		떡세트	2023. 12.	38,000	
148	■		떡세트	2023. 12.	38,000	
149	■		떡세트	2023. 12.	38,000	
계					5,610,000	

[별표 3]

명절 감사선물 지급 현황 총괄표(2021년 설~2024년 설)

(단위: 원)

지급시기	동창회 (A)		교직원 (명예교수포함)(B)		합계(C=A+B)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21년 설	13	416,000	386	12,352,000	399	12,768,000	장류세트
2021년 추석	14	448,000	392	12,544,000	406	12,992,000	장류세트
2022년 설	14	672,000	394	18,912,000	408	19,584,000	장류세트
2022년 추석	17	598,400	404	14,220,800	421	14,819,200	오일세트
2023년 설	17	598,400	405	14,256,000	422	14,854,400	오일세트
2023년 추석	17	697,000	408	16,728,000	425	17,425,000	오일세트
2024년 설	17	650,250	413	15,797,250	430	16,447,500	참치세트
합계	109	4,080,050	2,802	104,810,050	2,911	108,890,100	

※ 동창회 명절선물 지급 대상: 동창회 외부 임원 임기 내

교 육 부

기관경고, 통보(2), <별도조치> 통보

제 목 □대학원 ㄱ전공 입학전형 및 학사 운영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대학교 □대학원은 「전남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조(대학, 대학원)에 따라 설치된 특수대학원으로, 「학칙」 및 「전남대학교 □ 교학규정(이하, “□ 교학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학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전남대학교 □대학원은 「▲ 특성화 추진계획(2017. 9. 7., □장 결재)」을 수립하여 □에 외국인(중국 국적 소지자)으로만 모집·운영하는 ㄱ전공을 2018학년도부터 신설하였고, 2022학년도 1학기(전기)까지는 외국인 학생을 정원 내 모집인원으로 포함하여 선발·운영하였으며, 2022학년도 2학기(후기)부터는 정원 외 모집인원으로 구분하여 선발·운영해 오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입학전형 관련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제3항,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대학원 학생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칙」 제63조(입학자격), 제26조(입학자 선발) 및 제27조(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등의 입학)에 따르면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하고, 입학자는 입학전형에 의해 선발한다고 되어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학원 교학규정」 제9조(전형시기 및 방법), 제10조(입학지원서류) 및 제11조(입학시험)에 따르면 입학전형은 매 학기 개시 전에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모집요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지원서·대학졸업(예정)증명서·학부과정 성적증명서·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대학원 입학시험은 서류전형, 전공 필답고사 및 구술(면접)고사 등으로 실시하는 데 총장은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면제할 수 있고, 서류전형은 학부성적으로 하며, 전공 구술(면접)고사는 지원 학과 및 전공에 관련된 전공분야의 지식과 응용능력 및 판단력을 평가하고, 학과주임교수가 주관하되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학원 전·후기 입학전형 기본계획(2021학년도~2024학년도)」에 따르면 구술(면접)전형 위원은 학과 전임교원 중 3명(3명 이하인 경우, 인접학과 교수 포함)을

위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전남대학교 위임전결규정」 제3조(결재권의 내부위임)에 따르면 특수대학원의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요강 확정과 입학전형 합격자 확정 관련 결재 권한은 [표 1]과 같이 총장에게 있고, 세부 시행계획 확정 및 입학전형 홍보 권한은 대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표 1] 단과대학(원) 및 부속시설 등 공통 위임전결 구분표(발체)

부서별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원장	총장
			담당자		행정실장	부원장		
			실무급	팀장급				
☐ 대학원	1. 직인관리	○ 원장 직인 관리	기안	○				
	2. 기획업무	○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수립		기안			○	
		○ 발전계획 및 특성화 추진		기안			○	
		○ 기획 및 평가 업무		기안				
	3. 정원관리	○ 정원 조정		기안			○	
		○ 학과 및 전공의 실패		기안			○	
		○ 정원조정 및 학과 실패에 따른 학칙 개정		기안			○	
	4. 제규정 관리	○ 규정 제·개정	기안				○	
		○ 학과내규 관리	기안				○	
	5. 입학전형 업무	○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요강 확정	기안				○	
		○ 입학전형 세부 시행 계획 확정	기안				○	
		○ 입학전형 합격자 확정	기안				○	
		○ 입학전형 통계	기안		○			
		○ 입학전형 홍보	기안				○	

나. 지도교수 지정·운영 관련

「☐대학원 교학규정」 제2조(조직), 제7조(지도교수) 및 제8조(지도학생 수의 제한)에 따르면 ☐대학원 내 학과·전공에는 주임교수와 개별학생의 지도교수를 두고,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후 제1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도교수는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의 수는 매학년마다 3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 학위수여 관련

「□□대학원 교학규정」 제22조(수료사정), 제24조(학위수여) 및 제25조(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따르면 소정의 수업연한을 재학하고 학위논문 제출자는 24학점 이상, 학위논문 미제출자는 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수료 여부를 사정할 수 있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되어 있으며,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으나, 3전공의 경우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종합시험은 3개 과목으로 하며, 종합시험의 출제·채점위원은 전남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총장은 매 시험 실시 30일 전에 종합 시험 등에 관한 요강을 확정 공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종합시험은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나, 종합 시험의 경우 각 과목별 과락은 50점 미만으로 하며, 종합시험의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인 자가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하였을 때는 1년 이내에 과락과목만 재응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교육부는 [표 2]와 같이 국립대학 종합감사에서 대학원 종합시험 문제 출제 관련 동일한 문제를 중복으로 지속 출제하여 석사학위(또는 자격) 취득에 대한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당 대학에는 “대학원 종합시험 문제 출제 부적정”으로 지적하며 관리 강화와 개선을 요청하고, 담당부서에는 별도 통보해 온 바 있다.

[표 2] 대학원 종합시험 문제 출제 부적정 종합감사 지적 사례 현황

연번	대학(연도)	지적 사항	세부 내용	조치 사항
1	▲ (’13)	○ 교육대학원 졸업자격 시험(종합시험) 문제 출제 부적정	○ 2010학년도 2학기부터 2012학년도 2학기까지 최저 2개 학기에서 최고 3개학기까지 동일한 문제(1~3개)를 반복하여 출제	○ 동일 문제를 출제한 교수 8명 경고
2	▲ (’20)	○ 교육대학원 학위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종합시험) 문제 출제 부적정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2019학년도 2학기까지 최저 2개 학기에서 최고 3개학기까지 동일한 문제(1~3개)를 반복하여 출제	○ 동일 문제를 출제한 교수 11명 경고 ○ 동일한 문제를 중복출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시행 통보 ○ 별도조치 통보
3	● (’21)	○ 대학원 졸업 종합 시험 출제 부적정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2021학년도 1학기까지 학기 또는 학년을 달리하여(최저 2개 학기에서 최고 6개 학기) 동일한 문제(1~2개)를 중복 출제	○ 동일 문제를 출제한 교수 52명 주의 ○ 졸업을 위한 종합시험에서 동일문제를 중복 출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통보 ○ 별도조치 통보

또한, 「전남대학교 위임전결규정」 제3조(결재권의 내부위임) <별표 5>에 따르면 특수대학원의 단위업무로 1. 직인관리, 2. 기획업무, 3. 정원관리, 4. 제규정 관리, 5. 입학전형 업무, 6. 학위논문, 7. 학사관리, 8. 각종 위원회 운영, 9. 교육·연구 활동 지원, 10. 기타일반사항으로 나누고, 이 중 7. 학사관리 세부업무는 [표 4]와 같이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보충학점 수강대상자 관리, △지도교수 관리, △학위논문 제출자격(외국어 및 종합) 시험 관리, △학석사연계(통합)과정 운영, △협동과정 운영, △수료 및 학위수여 업무, △수료후 등록생 선발 및 관리 등으로 정하여, 기안자 및 전결권자를 명시하고 있다.

[표 3] 단과대학(원) 및 부속시설등 공통 위임전결 구분표(발체)

부서별	단 위 업 무	세 부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원장	총장
			담 당 자		행정 실장		
			실무급	팀장급			
특수 전문 대학원	7. 학사관리	○ 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	기안			○	
		○ 보충학점 수강대상자 관리	기안			○	
		○ 지도교수 관리	기안			○	
		○ 학위논문 제출자격(외국어 및 종합) 시험 관리	기안			○	
		○ 학·석사연계(통합)과정 운영	기안			○	
		○ 협동과정 운영		기안		○	
		○ 수료 및 학위수여 업무	기안			○	
		○ 수료후등록생 선발 및 관리	기안			○	

따라서 전남대학교 □대학원은 ㄱ전공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모집요강 확정 시 총장의 결재를 득하고 입학전형 운영 시 결재를 득한 입학전형 기본계획과 모집 요강 등을 준수하여야 했고, 학생 입학 후 제1학기 이내에 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학생의 지도교수를 위촉하고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가 매학년마다 3인 이내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했으며,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검증하는 종합시험 출제·채점 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총장이 매 시험 실시 30일 전에 종합시험 등에 관한 요강을 확정 공고하는 등 종합 시험 관리 업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가. 입학전형 업무처리 미흡

그런데 감사기간 동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ㄱ전공의 입학전형 업무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학원은 2024학년도 전기 ㄱ전공 모집요강 관련 총장 결재를 득하지 않았고, [표 4]와 같이 서류전형에서 4년제 학사 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례와 함께, 지원 자격을 갖춘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탈락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표 5]와 같이 구술(면접) 평가위원은 학과 전임교원 중 3명(3명 이하인 경우 인접학과 교수 포함)으로 위촉하여야 함에도 2021~2022학년도 전·후기 입학전형 운영 시 구술(면접) 평가위원으로 전임교원이 아닌 초빙강사를 포함하여 위촉·운영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표 4] □대학원 ㄱ전공 입학전형 중 서류전형 운영 부적정 사례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님에도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사례	4년제 대학 졸업자임에도 접수 누락되어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사례
※ 생략	

자료: 전남대학교 □ 제출

[표 5] □대학원 ㄱ전공 구술(면접) 평가위원 위촉 현황

연번	학년도 (전·후기)	구술(면접)위원 수	구술(면접)위원 전임교원 위촉 여부	비고
1	2021학년도 전기	3명	X	초빙교원 1인 포함
2	2021학년도 후기	3명	X	초빙교원 1인 포함
3	2022학년도 전기	3명	X	초빙교원 1인 포함
4	2022학년도 후기(1·2차)	3명	X	초빙교원 1인 포함
5	2023학년도 전기(1·2차)	3명	○	
6	2023학년도 전기(추가, 3차)	3명	○	
7	2023학년도 후기(1·2·3차)	3명	○	
8	2024학년도 전기(1·2·3차)	3명	○	
9	2024학년도 후기(1·2차)	3명	○	

나. 지도교수 지정·운영 미흡

감사기간동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ㄱ전공의 지도교수 지정·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대학원 ㄱ전공은 전공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지도교수를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도교수를 선정해 왔고,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가 3인을 초과하여 교수 1인당 최소 10명에서 최대 80명을 초과하여 지도하고 있었다.

[표 6] □대학원 ㄱ전공 지도교수 지정·운영 현황

연번	학기	지도교수 지정 현황			지도교수 운영 현황 (1인당 지도학생수)						합계	1인당 지도학생수 규정 준수 여부
		주임교수 (명)	지도교수 (명)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 추천, 대학원장이 위촉 규정 준수 여부	교수1	교수2	교수3	교수4	교수5	교수6		
1	2021-1학기	1	5	X	27	19	38	35	1		120	X
2	2021-2학기	1	6	X	23	23	20	22	22	19	129	X
3	2022-1학기	1	4	X	35	24	36	24			119	X
4	2022-2학기	1	4	X	13	44	17	42			116	X
5	2023-1학기	1	4	X	43	21	16	21			101	X
6	2023-2학기	1	3	X	83	20	19				122	X
7	2024-1학기	1	1	X	136						136	규정 개정으로 학과(전공)에서 정할 수 있음
8	2024-2학기	1	미정	X								

다. 학위수여를 위한 종합시험 관리 미흡

감사기간동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ㄱ전공의 학위수여를 위한 종합시험 관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ㄱ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관련 출제·채점 위원은 대학교 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은 준수하였으나 총장이 매 시험 실시 30일 전에 종합시험 등에 관한 요강을 확정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편, 7학기 연속 동일한 출제·채점위원을 위촉하여 6학기 연속 동일한 문항을 종합시험 문제로 출제하고 있었다.

[표 7] □대학원 ㄱ전공 종합시험 운영 현황

연번	학년도 (전·후기)	출제·채점위원 위촉 현황				총장이 시험 30일 전 확정 공고 준수 여부	종합시험 문항 현황		
		위원 수	위촉인	위촉 권한 준수 여부	비고		과목 수 (문항 수)	동일 문항 여부	비고 (문항 비교)
1	2021학년도 전기	3명	대학원장	○	7학기 연속 동일인	×	3과목 (6문항)	기준 학기	직전 학과와 비교
2	2021학년도 후기	3명	대학원장	○		×	3과목 (6문항)	○(4문항 동일)	
3	2022학년도 전기	3명	대학원장	○		×	3과목 (6문항)	○(6문항 동일)	
4	2022학년도 후기	3명	대학원장	○		×	3과목 (6문항)	○(6문항 동일)	
5	2023학년도 전기	3명	대학원장	○		×	3과목 (6문항)	○(6문항 동일)	
6	2023학년도 후기	3명	대학원장	○		×	3과목 (6문항)	○(6문항 동일)	
7	2024학년도 전기	3명	대학원장	○		×	3과목 (6문항)	○(6문항 동일)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계기관 등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그간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개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은 지적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이다.

가. 입학전형 업무처리 미흡

전남대학교는 2021학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요강과 2024학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요강에 대해 총장 결재를 득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실무자가 결재선을 오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답변하면서 향후에는 「전남대학교 위임 전결 규정」 및 「□대학원 교학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ㄱ전공 1차 서류전형 평가 진행 시 학과 업무 담당자 1인으로 하여금 직접 평가하도록 한 이유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전문계약직으로 중국어에 능통하고, 입학지원서류가 중국어로 되어 있어 중국어 비전문가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면서 향후에는 전남대학교 내 다른 특수대학원 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서류평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서류전형 운영 미흡 사례로 확인된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인정한 사례는 해당 지원자가 구술(면접) 전형에 응시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되었고, 자격을 갖춘 지원자였기에 접수했어야 하는 지원자를 접수하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사례는 해당 지원자가 서류전형 전 접수 취소 의사를 통지해 와 접수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ㄱ전공의 2차 구술(면접)전형은 학과 전임교원 중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2021~2022학년도 전·후기 입학전형 운영 시 구술(면접) 평가위원을 전임교원이 아닌 초빙강사를 포함하여 위촉·운영한 이유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임교원 협조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초빙교원을 포함하여 위촉 운영하였다고 답변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2023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는 인접학과 교수의 협조를 받아 전임교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답변하였다.

나. 지도교수 지정·운영 미흡

전남대학교는 ㄱ전공에서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전공주임교수가 대학원장에 지도교수를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한 이유는 당시 실무자가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학과에 안내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하였고, 지도교수 1명이 3명의 학생을 지도한다는 자체 규정과 달리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는 지도교수 1명당 학기별로 수십 명에 이르는 학생을 지도해 왔고, 규정을 개정하여 지도교수 1명당 지도학생 수 제한을 해제한 2024학년도부터는 지도교수 1명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이유는 ㄱ전공의 전임교원이 1명뿐이라서 부득이하였다고 답변하면서 다만 실질적으로는 규정 개정 전과 같이 학과 소속 초빙교원(3명)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외국인 학생의 입학과 동시에 이수과목 지도 및 기타 수학에 필요한 학사지도와 더불어 유학생 생활지도 및 학과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논문발표를 위한 논문지도 등 다방면에서 학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이와 관련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외국인 학생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학생 지원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학위수여를 위한 종합시험 관리 미흡

전남대학교는 ㄱ전공에서 총장이 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시행 30일 전에 시험 관련 확정공고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그간 규정대로 하지 않아도 착오 없이 진행되었기에 확정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향후에는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종합시험 관련 근거인 「□대학원 교학규정」 제25조와 종합시험 계획(안)에 따르면 종합시험에서 동일 문항 출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6학기 연속으로 동일한 문항을 출제해 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하면서 금번 감사를 기점으로 동일 문항 출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24학년도 후기 종합시험부터는 동일 문항을 배제하여 종합시험 문항을 출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향후에는 종합시험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종합시험 문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② 검토 결과

가. 입학전형 업무처리 미흡

전남대학교 □대학원이 매 학년도 학기별 입학기본계획 및 모집요강 관련 총장 결재를 득했어야 하나, 일부 학기에서 총장 결재를 누락한 점, 1차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 실수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류전형 합격·불합격 처리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 점, 2차 구술(면접) 진행 시 전임교원으로 3명을 위촉한다는 기본계획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입학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 강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지도교수 지정·운영 미흡

전남대학교가 □대학원 ㄱ전공을 ▲의 글로벌캠퍼스화를 통한 대학의 특수성 강화 목적으로 개설하였다면, 동 학과에 지원한 외국인 유학생 개개인에 대한 한국 생활 정착 및 학사 지원 등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전남대학교 □대학원이 2018학년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ㄱ전공이 전임교원 1명과 초빙교원 3명 내외의 인력으로 다수 자비유학생의 한국유학을 지원해 온 점이 충분했는지, 그간 학사 운영이 내실있게 운영되었는지 등은 자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2024년 3월 1일자로 지도교수별 지도학생 수 관련 제한을 학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대학원 교학규정을 개정한 것이 ㄱ전공의 경우에는 지도교수 1명이 백 명이 넘는 학생을 지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에 현 제도가 외국인 유학생 지원의 내실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대학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학위수여를 위한 종합시험 관리 미흡

전남대학교 □대학원 ㄱ전공은 실질적으로 해당 학과의 석사학위 획득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시험이라 할 수 있는 종합시험 관련 문제 출제·채점위원이 7회 연속 동일하고, 6회 연속 동일한 문항으로 출제된 점은 석사학위 취득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킬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입학전형 업무처리 미흡, 지도교수 제도 운영 미흡, 종합시험 운영 미흡 등 담당 업무를 소홀히 한 □대학원에 경고 조치 하고, (기관경고)
- ②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원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 및 종합시험 운영 등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신분상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기 바라며, (통보)
- ③ 향후 □대학원 ㄱ과가 개설 취지를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한국 생활 적응 및 학사 관리 개선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조치할 사항

<별도조치(통보)>

교 육 부

기관주의, 시정, 통보, <별도조치> 통보

제 목 등록금 반환 대상인 제적 학생에게 등록금 미반환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개요

전남대학교는 「전남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4조 등에 따라 학생 등록금 수납 및 반환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표]와 같이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등록금의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일 또는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금액은 반환사유 발생일(학적변동 기준일)에 의해 산정 (예: 미복학 제적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일 기준)

또한, 그 해당 사유로 △법령에 따라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남대학교 학칙」 제33조 제2항에서도 「같은 규칙」 제6조 제2항을 준용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별표] “휴학 후 미복학하여 제적된 학생 대상 등록금 미반환 현황”과 같이 2021학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휴학 후 미복학하여 제적된 총 3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등록금 합계 53,332,440원(기납부한 등록금 총액은 71,414,04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그간 휴학 후 미복학하여 제적된 학생 중 등록금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등록금을 반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앞으로는 학생 및 학부모가 등록금 반환 신청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및 학과 공문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의 정확한 연락처가 학적 시스템에 반영되어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등록금 반환 업무 진행 시 반환사유별로 미반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주의하고, (기관주의)
- ② 제적 학생 33명에게 미반환된 등록금 53,332,440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며, (시정)
- ③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대상 학생에게 등록금 반환 신청 정보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등록금 반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도조치(통보)>

[별표]

휴학 후 미복학하여 제적된 학생 대상 등록금 미반환 현황

연 번	대상학생			등록금 납부 및 학적변동 현황				제적사유 및 미반환 금액			금액
	학과	학번	성명	납부 년도	납부 학기	납부금액	학적변동 (휴학)	제적일	사유	금액	산정근거
1					1	2,220,000	2020.5.6.	2021.11.8.	미복학	1,110,000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반환
2					2	1,518,300	2020.8.31.	2022.11.11.	미복학	1,518,300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신청시 등록금 전액 반환
3					1	2,050,000	2020.4.18.	2024.5.16.	미복학	1,366,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4					1	733,990	2020.4.16.	2024.5.16.	미복학	489,32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5					2	2,020,000	2020.8.24.	2022.11.11.	미복학	2,020,000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신청시 등록금 전액 반환
6					1	1,795,000	2017.8.24.	2023.11.21.	미복학	1,795,000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신청시 등록금 전액 반환
7					1	1,687,000	2021.4.5.	2023.11.21.	미복학	1,124,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8					2	2,050,000	2020.10.14.	2023.11.21.	미복학	2,050,000	수업연한초과자 수강취소로 등록금 전액 반환
9					2	1,795,000	2019.10.8.	2023.11.21.	미복학	1,196,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10					1	1,102,000	2020.4.12.	2023.5.12.	미복학	368,00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분할납부자로 전액 기준으로 산정)
11					1	2,286,000	2019.4.10.	2021.5.10.	미복학	1,524,00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12					1	1,719,000	2022.3.01.	2023.11.21.	미복학	1,432,50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13					1	460,000	2019.3.28.	2023.5.12.	미복학	153,83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분할납부자로 전액 기준으로 산정)
14					1	1,963,000	2020.4.27.	2024.5.16.	미복학	1,308,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15					1	2,220,000	2021.4.17.	2024.5.16.	미복학	1,480,00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16					2	554,000	2019.9.18.	2021.12.15.	미복학	185,16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분할납부자로 전액 기준으로 산정)
17					1	2,200,000	2020.3.20.	2022.5.18.	미복학	1,833,33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연 번	대상학생			등록금 납부 및 학적변동 현황				제적사유 및 미반환 금액			금액
	학과	학번	성명	납부 년도	납부 학기	납부금액	학적변동 (휴학)	제적일	사유	금액	산정근거
18					1	2,220,000	2021.3.2.	2024.5.16.	미복학	1,850,00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19					1	1,143,750	2021.10.6.	2023.11.21.	미복학	374,75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분할납부자로 전액 기준으로 산정)
20					2	2,906,000	2019.10.26.	2021.1.08.	미복학	1,937,33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21					1	563,000	2020.3.5.	2024.5.16.	미복학	188,33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분할납부자로 전액 기준으로 산정)
22					2	2,248,000	2020.9.14.	2023.11.21.	미복학	1,873,33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23					1	2,501,000	2021.3.17.	2024.5.16.	미복학	2,084,16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24					2	2,953,000	2020.9.8.	2021.5.10.	미복학	1,968,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25					1	4,500,000	2020.3.18.	2022.5.18.	미복학	3,750,00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26					1	3,465,000	2021.4.13.	2024.5.16.	미복학	2,310,00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27					1	2,270,000	2022.3.7.	2024.5.16.	미복학	1,891,66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28					2	4,544,000	2021.9.1.	2023.5.12.	미복학	3,786,66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29					1	1,993,000	2021.5.11.	2023.5.12.	미복학	1,993,000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 신청시 등록금 전액 반환
30					1	2,924,000	2022.4.7.	2024.5.16.	미복학	1,949,33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31					1	3,034,000	2022.4.25.	2023.5.12.	미복학	2,022,66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32					1	3,275,000	2022.3.22.	2024.5.16.	미복학	2,729,160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신청 시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33					1	2,501,000	2021.04.19.	2024.05.28.	미복학	1,667,330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신청 시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계	33명					71,414,040				53,332,440	

교 육 부

기관경고, 통보

제 목 공사 감독일지 작성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매년 건물의 신·증축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각종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¹⁷⁾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1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17)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4.“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하고는 공사감독일지와 검측대장 등의 서류를 작성 또는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120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당일 공사추진상황 및 감독업무수행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별지 제60호 서식의 공사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그 사본을 공사감독일지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해 공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주어진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의 각종 공사 현황(계약금액 3억 원 이상)을 확인한 결과 [별표] “공사감독일지 미작성 현황”과 같이 2021. 3. 22.부터 2024. 7. 11.까지 계약을 체결한 67건의 공사 중 54건의 공사에서 지정된 공사감독자가 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과의 직원은 시설직렬(건축·토목)과 공업직렬(기계·전기)로 나뉘지며, 업무분장에 의해 직원별로 담당 건물을 정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감독자로 지정한다고 설명하였다.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현장에 감리가 배치되었기에 감리일지로 대체한 경우가 있었으며, 관급자재의 경우 미작성하였으나,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진행중이었던 사업 및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당일 공사 추진 상황 및 감독업무 수행 내용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

비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 결과

전남대학교는 [표]와 같이 총 67건의 공사(3억 원 이상)를 추진하였으며, 각 공사별로 공사감독자를 지정하였다.

[표] 전남대학교 공사 추진 현황

(단위: 건)

구분	대상 공사건 (3억원 이상)	공사감독일지· 검측대장 작성	감리대체	공사감독일지 미작성		
				소계	검측대장	
					작성	미작성
●●	51	3	5	43	7	36
▲	16	5	0	11	2	9
합계	67	8	5	54	9	45

공사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감리일지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총 54건의 공사에서 공사감독일지(감리 대체 5건 제외)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관급자재 구매 설치의 경우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미작성 사유로 볼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일지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검측대장은 일부 작성된 점,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45건에 달한다는 점은 처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① 공사감독일지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부서(●과, ●●과)에 경고 조치하고,
(기관경고)

② 시설공사 추진 시 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공사 감독자가 공종별 추진내용 등을 공사감독일지에 철저히 작성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공사감독일지 미작성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구분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감독자	작성 여부(0,X)		비고 (미작성사유)
								공사감독 일지	검측대장	
1	공사				379,589			X	X	관련규정 미인지
2	공사				340,575			X	X	관련규정 미인지
3	공사				1,219,265			X	0	공사일보 대체
4	공사				820,853			X	0	관련규정 미인지
5	공사				334,647			X	X	관련규정 미인지
6	물품				432,076			X	X	관급자재
7	공사				542,181			X	X	관련규정 미인지
8	공사				1,407,390			X	X	관련규정 미인지
9	공사				981,052			X	X	관련규정 미인지
10	공사				375,557			X	0	관련규정 미인지
11	공사				424,423			X	0	관련규정 미인지
12	공사				1,934,187			X	0	공사일보 대체
13	물품				822,723			X	X	관급자재
14	공사				578,597			X	X	관련규정 미인지
15	공사				432,767			X	0	관련규정 미인지
16	공사				4,236,670			X	0	관련규정 미인지
17	공사				1,171,434			X	X	관련규정 미인지
18	공사				776,380			X	X	관련규정 미인지
19	물품				466,470			X	X	관급자재
20	용역				490,592			X	X	관련규정 미인지
21	물품				1,013,753			X	X	관급자재
22	공사				653,370			X	X	관련규정 미인지
23	물품				443,357			X	X	관급자재
24	공사				407,066			X	X	관련규정 미인지
25	공사				530,530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26	공사				552,675			X	X	관련규정 미인지
27	공사				582,756			X	X	관련규정 미인지
28	공사				385,500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29	공사				366,217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30	공사				3,433,867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연번	구분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감독자	작성 여부(0,X)		비고 (미작성사유)
								공사감독 일지	검측대장	
31	물품				849,362			X	X	관급자재
32	공사				421,251			X	X	관련규정 미인지
33	공사				345,552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34	물품				324,200			X	X	관련규정 미인지
35	공사				697,885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36	공사				318,916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37	공사				317,062			X	X	관련규정 미인지
38	물품				356,848			X	X	관급자재
39	공사				739,278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40	공사				358,918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41	공사				406,589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42	공사				451,044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43	물품				403,976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44	공사				738,843			X	0	관련규정 미인지
45	공사				1,050,749			X	0	관련규정 미인지
46	공사				3,884,620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47	공사				429,688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48	공사				601,487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49	공사				363,517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50	물품				455,628			X	X	관련규정 미인지
51	물품				313,822			X	X	관련규정 미인지
52	물품				410,583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53	공사				683,434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54	공사				383,593			X	X	진행중 관련규정 미인지
		합계			41,843,364					

※ 계약금액 3억 원 이상 공사 기준

교 육 부

주의, 시정

제 목 시설공사 시공내역 정산 미실시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트공사를 위해 [표 1]과 같이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 및 ▲에서 총 64건(합계 8,462,900천 원)의 공사를 발주하였다.

[표 1] 트공사 발주 금액

(단위: 천 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 계
●●	(12건) 1,884,080	(9건) 568,225	(17건) 3,209,545	(5건) 1,042,330	(43건) 6,704,180
▲	(4건) 270,537	(4건) 71,070	(7건) 705,808	(6건) 711,305	(21건) 1,758,720
합 계	(16건) 2,154,617	(13건) 639,295	(24건) 3,915,353	(11건) 1,753,635	(64건) 8,462,90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3조(감독)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검사) 제1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ㄷ공사의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공사를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계약내용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일부가 시공되지 않는 등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감액 등의 시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별표] “ㄷ공사비 미정산 현황”과 같이 6건의 공사에서 실제 시공내역을 확인하여 시정조치 또는 정산하지 않은 결과 계약금액(총 2,106,693천 원)에서 시공되지 않은 9,876천 원의 공사비를 정산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E공사는 설계용역으로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내역서, 도면 등)를 납품받아서 발주했으며, 건축기계설비기술사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시공되었고, 각 제조사에서 자체감리를 통해 설치 확인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작동기능상 문제가 없어, 설계 당시 v의 수량이 과다하게 산출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향후에는 설계용역 납품 시 수량산출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공사 완료 후 현장 실측을 통해 설계 물량과 시공 내역을 대조하여 정산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공사비 정산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AB, AC에게 주의 조치하고, (주의)

[관련자 명세 별첨]

- ② “ㅎ” 등 6건 공사의 업체로부터 과다 지급한 미시공 공사금액 9,876천 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트공사비 미정산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구분	공사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자/대표	공종구분	시공내역				감독관
							당초설계	실제시공	미시공	미정산액	
1	●●		2023.6.28.	190,451			37조 (단가 51,920원)	22조	15조	779	
2			2023.6.21.	1,013,753			211조 (단가 51,920원)	138조	73조	3,790	
3			2023.8.7.	253,597			42조 (단가 51,920원)	36조	6조	312	
4	▲		2021.6.30.	130,993			40조 (단가 43,600원)	35조	5조	218	
5			2023.11.6.	145,886			48조 (단가 51,920원)	21조	27조	1,402	
6			2024.6.17.	372,013			98조 (단가 51,920원)	33조	65조	3,375	
합계				2,106,693						9,876	

교 육 부

시정

제 목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2021. 3. 22.에 ▲과 “기공사”의 계약(계약금액 327,514천 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후 2022. 1. 29. 준공 처리하는 등 23건의 공사에 대하여 2021. 8. 17.부터 2024. 3. 12.까지 준공 처리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별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21. 3. 22.부터 2024. 2. 13.까지 계약을 체결한 “ㄱ공사” 등 23건의 공사에서 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면서 수량의 적용이 불가하거나 사용증빙으로 인정함이 부적정한 정산 필요항목을 감액 조정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3,461천 원(제 경비 포함)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적용제외 품목 인지 부족,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 부족 등으로 정산이 처리되지 않았고, 향후 시설공사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지출 내역 및 증빙 자료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정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정산 필요액에 대해서는 회수 처리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ㄱ공사” 등 23건 공사의 업체로부터 과다 지급한 공사금액 3,461천 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별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천 원)

연번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계약금액	계약당사자	담당자	안전관리비내역	
							계상액	정산필요액 (부가세 포함)
1							6,330	325(377)
2							808	135(155)
3							661	128(146)
4							27,670	200(232)
5							5,836	24(27)
6							1,775	163(184)
7							47,632	61(77)
8							16,364	44(47)
9							863	15(17)
10							1,414	90(99)
11							1,954	224(251)
12							4,615	96(108)
13							1,247	399(459)
14							1,327	267(309)
15							684	13(15)
16							2,040	18(21)
17							1,405	18(21)
18							878	12(14)
19							1,414	415(467)
20							2,111	85(95)
21							1,435	18(20)
22							9,275	270(307)
23							675	12(13)
합계				0			138,413	3,032(3,461)

교 육 부

기관경고, 통보

제 목 가설건축물 설치 부적정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창고 및 온도제어실 등의 용도로 총 10개 동(208㎡)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남대학교 건물 및 토지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는 총괄 관련부서로 '건물의 공간 사용 승인 및 배정과 토지의 사용

승인'을 시설과는 '건물의 구조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진단'을 소관업무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는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을 고려한 후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별표]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현황”과 같이 미상일부터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미리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 없이 학내 창고 용도 등으로 가설건축물 총 10개 동(208㎡)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내부 승인 체계 및 관련 법적 요인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관할청과 협의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식 개선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연 1회 시행하는 캠퍼스 공간 총조사의 범위를 건물 공간에서 토지의 미승인 사용까지 포함하도록 개편하고, 가설건축물 및 토지 사용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기관경고)
- ② 관할청 협의 없이 설치한 가설건축물 10개 동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 현황

(단위: m²)

연번	위치	형태(규격)	면적	용도	설치연도	비고 (추진계획 및 경과)
1		컨테이너(8×3)	24		2004년	
2		컨테이너(6×3)	18		2004년	
3		컨테이너(10×6)	60		2020년	
4		컨테이너(3×5)	15		2004년	
5		컨테이너(3×6)	18		2014년	
6		컨테이너(3×6)	18		2014년	
7		컨테이너(3×6)	18		2008년 이전	
8		컨테이너(3×6)	18		2010년 이전	
9		이동식목재(5×3)	15		2010년 이전	
10		컨테이너(2×2)	4		2024년	
합계			208			

교 육 부

기관주의, 통보

제 목 전기설비 안전관리규정 및 연간 점검계획 미수립

소 관 기 관 전남대학교

조 치 기 관 전남대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전남대학교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대학의 전기설비에 대해 누전 및 단락으로 인한 인명 및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직무 고시”라 한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 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대학교의 전기안전관리자는 대학 건물의 특성에 따라 전기 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연간 점검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전남대학교 2021년부터 2024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별표] “전기설비 안전점검 현황”과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점검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매년 실시해야 하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필수 항목 중 1개 항목(전원품질분석)을 점검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결과

① 관계기관 의견

전남대학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수용하면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진 않았으나, 매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의뢰·실시하고,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보고받아 보수하고 있으며, 매월 자체적으로 전기시설물 점검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22년도의 미실시 점검 항목인 전원품질분석에 대해서는 ▲ 본사에 용역을 의뢰하여 단위

변전실 보호협조 보고서(전력계통분석)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남대학교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및 전원품질분석을 매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② 검토 결과

전남대학교가 전기 안전관리규정과 연간 점검계획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매월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점검 항목별로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고, 미점검 항목의 경우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관련 분석을 실시한 점은 처분 시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전남대학교 총장은

- ① 안전관리규정 작성, 연간 안전점검 계획 수립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부서 (●과)에 주의 조치하고, (기관주의)
-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전기설비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별표]

전기설비 안전점검 현황(2021년~2023년)

필수 점검 항목*		연도별 점검 여부(○, ×)			
		2021	2021	2022	2023
연간 점검 계획		×	×	×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저압 전기설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 절연저항 측정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변압기 점검					
- 절연저항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
예비발전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
전원품질분석**		○	○	×	○
연도별 미점검 항목 수		0	0	1	0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 전원품질분석 항목에서 2022년에는 전력계통분석을 실시하였음

IV. 현지조치 사항

지적 건명	지적 내용	조치할 사항
1. 사회계 진출금 대학 회계 미편입 사용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대는 전남대학교 ■재단 등 7개 공익법인이 대학회계로 진출한 자금을 대학회계에 미편입하여 사용 <p>【「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5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 ■재단 회계 등 타 회계에서 대학회계로 전입된 자금을 대학 회계 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2. 시설공사의 퇴직 공제부금 정산 시 증빙 확인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공사에 계상된 퇴직공제부금 정산 시 증빙 금액이 아닌 업체의 공사원가정산서 금액을 반영하여 지급 <p>【「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1조~제9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 시설공사의 법정경비 정산 시 증빙금액을 확인하여 정산처리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3. 내역서와 다른 규격의 제품 설치시 지정조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공사(ㄷ공사)의 제품(케이블트레이 및 커버) 규격이 상이(내역서와 도면, 시공)함에도 설계변경 또는 지정조치 미실시 <p>【「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 시공 제품의 규격 변동 시 설계변경 또는 지정조치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4. 당초 설계와 다르게 보완 재시공한 내역시 지정조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ㄷ공사의 관급자재(자연석경계석) 시공 후 BF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며 당초 설계와 다르게 재시공 <p>【「국가계약법」 제14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보 - 해당 시공 내역(경계석 20m)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시공, 환수조치 등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람